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97-14

Vietnam



BIG3 수출국의 新통관환경 및 FTA 활용방안

베트남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발간사 ▶▶▶

2015년 12월 중국, 베트남과의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존 한-미 FTA를 포함하여 중국, 베트남까지 한국의 3대 수출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후 이들 국가로의 수출비중은 매년 확대되어 17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준의 약 50%에 근접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수출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대 수출대상국에 대한 FTA 활용정보와 수출을 위한 핵심 정보들이 분산되어 있어 수출시장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BIG3 수출국의 新통관환경 및 FTA 활용방안」 베트남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에 한-베트남 FTA 활용현황 분석 및 활용품목 추천 정보와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들의 FTA에 대한 이해와 활용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무역환경 및 통관제도 모니터링을 통해 베트남으로 신규시장 진입 시 필요한 신규 통상·통관 이슈도 업데이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및 진출 가이드라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우리 기업들에게 한-베트남 FTA 활용을 위한 핵심정보 제공과 변화하는 통관제도 및 통상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관세청은 기업들의 FTA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 8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성태곤

Contents

발간사	1
베트남 개황	4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4
베트남 FTA 체결현황	5
베트남 통관·통상환경	5
한-베트남 FTA의 개관	6
1. 추진경과	6
2. 체결 의의	6
3. 주요내용	6
4. 한-베트남 FTA 협정문 구성	7
5. 한-베트남 FTA 추가 개방 결과	7
한-베트남 FTA 활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8
한-베트남 FTA 활용 단계별 순서	8
한-베트남 FTA 활용 단계별로 이해하기	8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방식	9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C/O) 작성시 유의사항	10
최근 베트남 C/O 발급의 변화된 특징	11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본용어 쉽게 이해하기	11
제 I 장 한–베트남 FTA 활용품목 및 활용방안	15
제1절 한–베트남 FTA발효 전후 對베트남 교역량 비교	16
제2절 한–베트남 FTA 활용현황 및 활용품목 추천	18
제3절 류(HS2단위)별 활용품목 및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22
제 II 장 베트남의 통관 법제도	54
제1절 통관제도	55
제2절 최근 통관 이슈	64
제 III 장 베트남의 통상 법제도	75
제1절 산업별 수출 환경	76
제2절 최근 수출입 정책의 변화	78
제3절 최근 품목별 주요 수출입 이슈	80
제 IV 장 베트남 전자상거래 (E-Commerce, EC)	87
제1절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88
제2절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92
제3절 베트남 판매주체별 전자상거래 플랫폼	96
제4절 對베트남 온라인 수출 방법	103
제5절 전자상거래를 통한 FTA 활용방안	110

베트남 개황



- **국가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수도 하노이)
- **행정구역** 5개 직할市 58성(면적 331,698km²)
- **인구** 9,500만 명(2017년), 낌(Kinh)족(86%) 평균연령(29.9세)
- **공용어** 베트남어, 문맹률 2.9%(15~60세 기준)
- **기후** (남부) 열대성 기후, 우기건기
(북부) 아열대성 기후, 4계절
- **종교** 불교, 카톨릭, 카오다이교
- **정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공산당 : 국가/사회 영도하는 유일세력)

■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2017	2018f	2019f	2020f
GDP(십억 달러)	220.4	240.8	264.9	290.6
GDP 성장률(%)	6.8	6.6	6.5	6.5
1인당 GDP(달러)	2353.7	2545.9	2774.4	3014.5
국내수요*(%)	8.0	8.1	5.3	9.1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3.8	4.0	4.0
상품·서비스수출(%)	15.9	13.1	13.9	13.1
상품·서비스수입(%)	15.1	11.3	15.6	14.4
실업률(%)	2.2	2.2	2.2	2.2

주 : f(전망치)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총 국내수요(거시경제지표)로 소비, 투자, 순수출 등을 합산해 계산함.

■ 베트남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종	검토종
아세안 공동추진 발효 (5개 FTA)	아세안-중국 FTA	RCEP ¹⁾	FTAAP ²⁾
	아세안-일본 FTA		
	아세안-한국 FTA		
	아세안-인도 FTA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베트남 단독추진 발효 (5개 FTA)	AFTA ³⁾	베트남-EFTA	우크라이나
	베트남-EAEU FTA		
	베트남-일본 EPA		스리랑카
	베트남-칠레 FTA		터키
	베트남-한국 FTA		
	베트남-EU FTA(미발효)		
	CPTPP ⁴⁾ (미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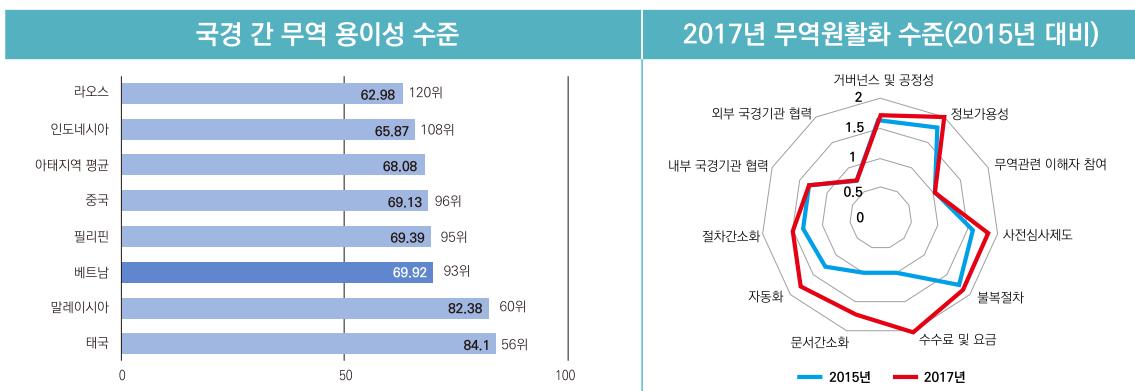
1)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페루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정식명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임.

2) APEC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으로 TPP와 RCEP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경제통합 기구임.

3) 아세안자유무역지대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들간의 교역시 제한적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지역 경제통합체임.

4) 미국을 제외한 TPP 11개 회원국들이 2017년 11월 TPP-11 통상장관회담에서 TPP 협정을 '포괄적·점진적 TPP'라는 의미의 CPTPP(Comprehensive-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로 변경하였으며, 2018년 1월 협상이 최종 타결됨.

■ 베트남 통관·통상환경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7; 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2017

* (2017년) 베트남의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으로 국경 간 무역 용이성이 향상되었으며, 전년 대비 15계단 상승한 93위로 평가됨.

* (2017년) OECD 무역원활화지수는 베트남의 무역환경 항목 중 정보기용성 및 수수료 요금 부분은 아세안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함.

한-베트남 FTA의 개관

1. 추진경과

- 2015년 12월 20일 한-베트남 FTA가 정식 발효했으며, 2018년 8월 현재 2년 8개월이 경과
 - 2012년 8월 한-베트남 FTA 협상개시 시작, 9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4년 12월 실질타결을 선언, 2015년 5월 정식서명 후 2015년 11월 국회비준 통과

2. 체결 의의

- 한-베트남 FTA 체결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및 시장 경쟁조건 개선
 - 2017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국이자 인구 약 9,500만명, GDP 성장률 6.8%의 떠오르는 유망 신흥시장
- 한-베트남 FTA는 최초의 한-아세안 FTA의 업그레이드 협정으로 양국간 불균형한 상품양허 수준을 개선
 -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규범 측면에서 한-아세안 FTA+a 협정

3. 주요내용

- (협정문 구성) 서문 및 총 17개 챕터로 구성되며, 한-아세안 FTA 대비 원산지제도 등을 개선하고, 전자상거래, 지재권 등을 추가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
 - (원산지) 특혜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예: 사전심사제도, 600달러 이하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면제)
 - (전자상거래)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 챕터를 채택

4. 한-베트남 FTA 협정문 구성

구 분	챕 터
상품	① 상품, ② 원산지 규정(PSR 포함), ③ 통관 및 무역원활화, ④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⑤ 기술장벽, ⑥ 무역구제
서비스·투자	⑦ 서비스(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포함), ⑧ 투자
규범·협력	⑨ 전자상거래, ⑩ 경쟁, ⑪ 지재권, ⑫ 경제협력, ⑬ 투명성
총칙	⑭ 일반규정, ⑯ 분쟁해결, ⑯ 예외, ⑰ 제도 및 최종 조항

- (추가 개방) 한-아세안 FTA의 민감·초민감품목 대상으로 한-베트남 FTA 협상을 추진하여, 추가 관세 철폐로 자유화 수준 확대
 -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4.7%, 베트남은 92.4% 추가 개방
 - 한국 : 한-아세안 FTA (91.7%) + 추가자유화 (3%) = 한-베트남 FTA (94.7%)
 - 베트남 : 한-아세안 FTA (86.3%) + 추가자유화 (6.1%) = 한-베트남 FTA (92.4%)
 -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은 499개, 베트남은 272개를 추가 개방

5. 한-베트남 FTA 추가 개방 결과

국가명	기준	한-아세안 FTA	추가개방	한-베트남 FTA
한국	수입액	91.7%	3%	94.7%
	품목수	11,169개	499개	11,668개
베트남	수입액	86.3%	6.1%	92.4%
	품목수	8,245개	272개	8,517개

한-베트남 FTA 활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 한-베트남 FTA 활용 단계별 순서



■ 한-베트남 FTA 활용 단계별로 이해하기

①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FTA 활용의 첫 단계로서 이를 잘못 수행하면 이후 원산지판단 및 FTA 업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국(베트남) 기준의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코드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발효된 협정상 해당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또는 어느 정도 관세가 경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양허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양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❸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기준’과 특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뉜다. 품목별 기준은 협정별 또는 물품별(HS코드 6단위 기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과 물품별로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❹ 원산지 증빙서류의 준비

원산지 증빙서류란 ‘원산지상품’으로 판정받기 위한 근거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❺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은 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원재료 내역, 원재료의 HS코드, 원재료 및 상품의 가격,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제조공정 등)를 바탕으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❻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가 발급되어야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다.

■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방식

구 분	내 용
발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개성공단 생산물품은 세관발급) • 베트남 : 산업무역부
발급 신청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위임받은 대리인
발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선적 전 ✓ 선적일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3근무일에 선적일 포함) • 선적 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 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발급 가능

구 분	내 용
증명서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일 후 1년
특혜관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 사후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 또는 전자로 서명, 인장 인쇄 •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1부, 사본은 2부로 구성 • 원본은 수입자, 제2사본은 수출국 보관 • 제3국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 보관

■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C/O) 작성시 유의사항

작성시 유의사항	내 용
증명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3장 부속서3-다
사용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기재 원칙
소급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sued Retroactively” 기입
품목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품목은 을지 사용 가능
전자발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된 형태로서 발급기관에 의해 수작업 또는 전자로 서명 및 날인 가능
분실, 도난, 분실 시 재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발급기관에 진정등본 발급 서면 요청 • “Certificat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발행번호 dated 날짜 기입
제3국 송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 제13란(비고)에 “비당사국송장(Non-Party invoicing)” 기록, 송장 발행회사 이름, 국가명 기재
기타 필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러프린트 인쇄 • 한-베트남 FTA 규정양식 사용 • 전자적으로 인정된 서명, 날인된 증명서 인정

■ 최근 베트남 C/O 발급의 변화된 특징

개시일	주요 내용	관련 법제도
2018. 4	• 베트남 관세총국에 정식 통보된 한국 발급기관의 C/O만 인정	Official Letter No.1085/GSQL-GQ4
2018. 4	• C/O와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의 HS코드 불일치 유의	Official letter No.1079/GSQL-GQ4
2018. 3	• 재발급 C/O의 거부 사유로 Reference Code 불인정	Official letter No.1464/TCHQ-GSQL
2018. 3	• 베트남의 원산지확인제도 도입	Decree No.31/2018/NĐ-CP Circular No.05/2018/TT-BCT
2017. 12	• FTA 사후적용, C/O 형식요건 심사강화 지침	Official Letter No.8382/TCHQ-GSQL

⑦ 관련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원산지 판정 자료 및 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증명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⑧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의 종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검증자는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보관하였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본용어 쉽게 이해하기

1. 원산지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 판단을 위해 적용되는 기준으로,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자 모두 충족을 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특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일반적으로 HS코드 6단위별로 그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다.

2.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 Criterion)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이 정하는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상품”은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농축수산물이나 광산물에 주로 적용된다.

3.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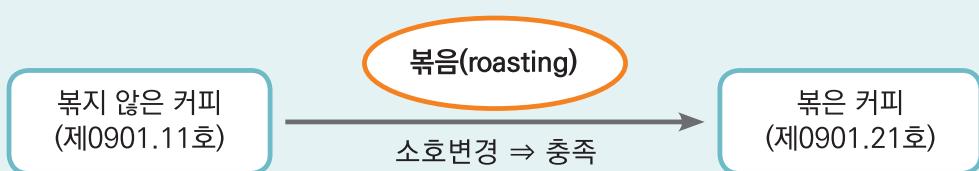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될 때,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Change of Chapter) :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앞의 2단위(류, Chapter)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 :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앞의 4단위(호, Heading)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앞의 6단위(소호, Sub-heading)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사례 〉

- 볶은 커피(제0901.21호)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역외산 제0901.11호의 볶지 않은 커피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0901.21호의 볶은 커피를 생산한 경우, 6단위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 역내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s)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해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협정 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계산방법에는 공제법(BD, Build-down Method), 집적법(BU, Build-up Method),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 등이 있다.

〈공제법(BD, Build-down Method) 사례〉

- 가정용 믹서기(제8509.40호) :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완제품 FOB 가격	₩35,000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기준(RVC40) 선택
------------	---------	---------	------------------

〈원재료 명세 및 가격구성표〉

NO.	재료명	품목번호	단가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모터 ASS'Y	8501.10	₩15,000	1 EA	₩15,000	일본(역외산)
2	본체 케이스	8509.90	₩3,000	1 EA	₩3,000	한국
3	PCB	8534.00	₩300	2 EA	₩600	미국(역외산)
4	커터	8208.30	₩200	1 EA	₩200	일본(역외산)
5	컵 ASS'Y	8509.90	₩7,000	1 EA	₩7,000	한국

$$\text{역내부가가치비율} \quad = \quad \frac{\text{본선인도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text{본선인도가격}} \times 100$$

(공제법)

$$\text{부가가치비율} \quad = \quad \frac{35,000 - 15,800(15,000+600+200)}{35,000} \times 100 = 54.86\%$$

본선인도가격(FOB)은 ₩35,000, 비원산지재료비는 ₩15,800으로 부가가치비율 계산결과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54.86%)가 발생했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5. 가공공정기준 (SP, Specific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협정에서 규정한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에서 수행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하여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좁은 편이고 주로 섬유류나 화학제품, 석유제품 등에 채택되어 있다.

6. 선택기준 및 조합기준

선택기준은 두 가지 이상의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며 조합기준은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제 I 장

한-베트남 FTA 활용품목 및 활용방안

제1절

한-베트남 FTA 발효 전후 對베트남 교역량 비교

제2절

한-베트남 FTA 활용현황 및 활용품목 추천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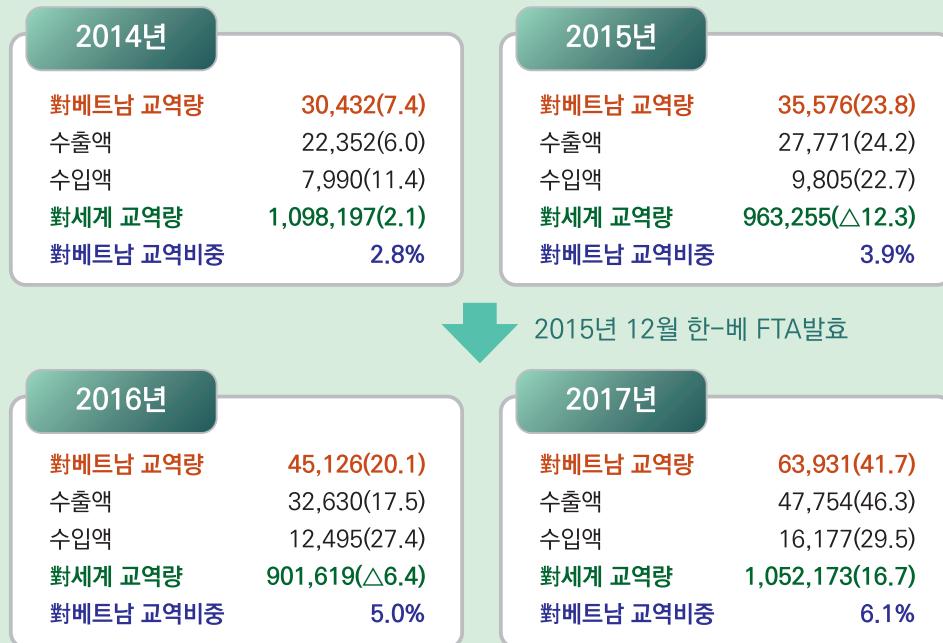
류(HS2단위)별 활용품목 및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제1절 한–베트남 FTA발효 전후 對베트남 교역량 비교

■ 2015년 12월 한–베 FTA발효 후 對베트남 교역량 및 교역비중 증대

(단위: 백만 달러)



*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 한–베 FTA 발효 후 양국 간 교역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2017년 對베트남 수출규모가 약 477억불, 수입규모가 약 161억불, 총 교역규모가 약 639억달러에 달하였다.

- 현재 베트남은 한국의 아세안 내 1위 교역국으로 對세계 교역량 대비 베트남의 교역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對 베트남 교역비중: 2014(2.8%), 2015(3.9%), 2016(5.0%), 2017(6.1%)
- 심지어 對세계 교역량이 감소했던 2015년~2016년에도 우리의 주요 수출 생산기지로서 베트남과의 교역규모는 매년 20%이상 성장하는 저력을 보였다.

■ 2017년 한국의 한-베 FTA 활용 산업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한-베 FTA	산업분류	특혜적용금액	특혜대상금액	수출활용률*	수출 미화금액
	전자전기제품	324	781	41.42%	26,026
	기계류	563	907	62.06%	7,694
	화학공업제품	612	1,161	52.73%	3,332
	철강금속제품	457	760	60.11%	3,219
	섬유류	808	2,687	30.05%	2,980
	광산물	1,863	1,877	99.27%	2,048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294	1,277	22.99%	1,387
	농림수산물	77	263	29.34%	428
	생활용품	136	464	29.39%	624
	잡제품	4	7	56.03%	18
	합계	5,137	10,184	50.4%	47,756

* 수출활용률이란 (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임

- 현재 한국의 對베트남 주력 수출 품목은 현지 투자기업 생산과 관련한 원부자재 및 자본재로 철강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직물,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광물성연료, 수송 및 산업용 기계류 등이다.
 - 원부자재 및 자본재의 수출 비중이 90% 이상으로 소비재에 비해 월등히 높다.
- 2017년 MTI 1단위 산업기준 수출금액은 전기전자제품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계류·화학 공업·철강금속제품이 뒤를 이었다.

- 對베트남 FTA수출활용률 평균은 약 50.4%로 기계류, 화학공업, 철강금속, 광산물, 잡제품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수출활용률을 나타냈다.
 - FTA특혜대상금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섬유류이며, 광산물·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화학공업 제품도 10억불 이상 FTA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실제 FTA 활용금액은 광산물의 경우만 약 18.6억불로 10억 달러를 초과함

제2절 한-베트남 FTA 활용현황 및 활용품목 추천

■ 한국의 한-베 FTA활용 ‘류’별(HS2단위) 수출현황

- 발효3년차인 2017년 기준 한-베 FTA 활용수출 관련하여, 다음의 표는 HS2단위 ‘류’를 중심으로 FTA 활용금액 상위 30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위: 백만 달러)

2017년FTA 활용순위 (금액기준)	HS (2단위)	HS코드 2단위(류) 설명	2017년FTA 활용금액	2017년FTA 활용률
1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875	99.56
2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546	31.89
3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309	40.83
4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92	86.12
5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258	49.68
6	60	메리야스편물과 뜨개질 편물	256	23.58

2017년FTA 활용순위 (금액기준)	HS (2단위)	HS코드 2단위(류) 설명	2017년FTA 활용금액	2017년FTA 활용률
7	72	철강	158	67.01
8	54	인조장섬유	153	31.88
9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152	53.51
10	55	인조단섬유	121	53.91
11	62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 및 뜨개질편물의 것은 제외)	116	29.91
12	48	지와 판지, 제지용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품	113	56.51
13	59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방직용섬유직물, 공업용의방직용 섬유제품	94	37.77
14	73	철강의 제품	91	51.59
15	38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70	66.64
16	74	동과 그 제품	60	85.14
17	41	원피 (모피제외)와 가죽	59	37.63
18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37	31.79
19	34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약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 페이스트	33	77.72
20	32	유연, 염색엑스,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안료, 페인트, 퍼티, 잉크	32	26.67
21	31	비료	26	51.66
22	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 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24	35.49
23	19	곡물, 곡물분, 전분,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20	68.12
24	56	워딩,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 코오디지, 로페스, 케이블과	20	27.36

■ FTA 활용률이 평균 수출활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류'

■ 한-베 FTA 발효이후 FTA 활용수출이 많이 증가한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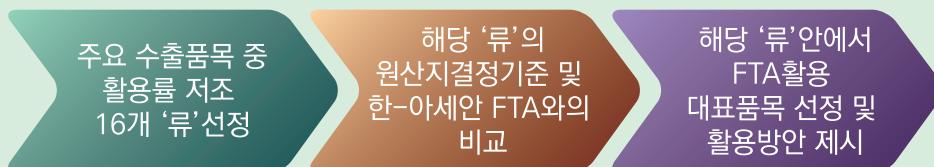
2017년FTA 활용순위 (금액기준)	HS (2단위)	HS코드 2단위(류) 설명	2017년FTA 활용금액	2017년FTA 활용률
25	40	고무와 그 제품	20	36.62
26	96	잡품	20	29.68
27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및 무기 화합물	17	43.00
28	64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15	36.78
29	52	면	15	33.14
30	17	당류와 설탕과자	13	80.70
종합			5,015	49.40

■ FTA 활용률이 평균 수출활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류'

■ 한-베 FTA 발효이후 FTA 활용수출이 많이 증가한 '류'

■ 한-베 FTA '류'별 활용품목 선정 및 정보제공

● 선정방법



- ① 상위 30개 '류'의 평균활용률 49.40%에 미치지 못하는 16개류를 선정하여 해당류의 FTA 활용현황 및 품목분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② 다음으로 해당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고 한-아세안 FTA와 비교하여 한-베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 ③ 마지막으로 해당류 안에서 FTA활용 대표품목을 선정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한-베 FTA 활용 ‘류’별 대표품목 선정방법

- ① 해당류에 포함되는 HSK10단위 단일품목 기준 FTA 대상금액 1,000만\$ 이상이면서 활용률이 50% 미만인 물품을 선정한다.
- ② 선정된 품목 가운데 해당물품의 표준적인 자재명세서(BOM)와 제조공정 파악이 가능한 품목 중 FTA 활용가능금액이 높은 품목을 대표품목으로 선정하고, 해당품목에 대한 한-베 FTA 활용현황 및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단, 32류, 94류, 28류, 52류의 경우 자재명세서(BOM) 및 제조공정 관련 자료 부족으로 표준적인 제조공정 파악이 어려움

제3절 류(HS2단위)별 활용품목 및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제39류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3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 참고: 제39류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분석

제39류에 대해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는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한다.

품목번호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제39류	CTH or RVC(40)	CTH or RVC(40)

2. FTA 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물품정보		산업	플라스틱		
		상품명	PET 필름		
		품명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물품정보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3907	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RESIN		
		또는				
		3920	62	PET 필름(Base Film)		
		3208		각종 코팅제제		
		3824				
	주요 원재료	3903		각종 코팅제제		
		3910				
		2902	30	톨루엔(용제)		
		2914	12	MEK(용제)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원료입고·배합-압출·연신-(코팅)-검수-컷팅·포장-출고		
		①	원료입고·배합	원료입고 후 원료를 제품 종류에 맞게 배합(Mixing)		
		②	압출·연신	원료의 압출·연신 과정에서 제품의 두께, 수축률 등 체크		
		③	(코팅)	제품 특성에 따라 코팅제를 도포하여 추가가공 가능		
		④	검수	외관체크(이물질 포함여부, 투명도 등)		
		⑤	컷팅·포장	출고업체 규격에 따른 컷팅·포장		
		⑥	출고	포장된 완제품의 업체납품		
제3920.62호 한-베 FTA 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베트남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1억 2,780만\$	25.94%	6%	0%	6%	
제3920.62호 한-베 FTA 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한 세율의 경우 베트남이 6%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0%가 적용되고 있다.			
	CTH or RVC (40)		제3920.62호 수출시 한-베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p>제3920.62호 한-베 FTA 활용방안</p>	<p>CTH or RVC (40)</p>	<p>우선, PET 필름 생산의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자.</p> <p>만약 업체가 PET 필름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RESIN을 입고·배합하여 직접 압출·연신의 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재료인 폴리 RESIN의 4단위 세번(3907)과 완제품인 PET 필름의 4단위 세번(3920)이 다르기 때문에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p> <p>그러나 원재료가 되는 PET 필름(Base Film)을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원재료인 PET 필름(Base Film)의 4단위 세번(3920)과 완제품인 PET 필름의 4단위 세번(3920)이 같기 때문에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원재료가 역내산(KR)이라면 수출(혹은 생산)업체는 원재료의 공급업체로부터 해당 원재료가 역내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한다.¹⁾ 그러나 원재료가 역외산이라면 완성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재료의 가격을 통해 최소허용범위 충족여부²⁾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혹시 해당 원재료가 최소 허용범위를 초과한다면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³⁾</p> <p>또한 세번변경기준에서 생산 제품의 특성에 맞게 코팅 등의 추가가공을 실시할 때 해당 추가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들(3208, 3824, 3903, 3910, 2902, 2914)은 완제품과 동일한 4단위 세번이 아니므로 역내산·역외산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p>
---------------------------------------	----------------------------	--

1) 이는 사후검증을 대비하기 위함이며 서류의 보관기간은 수혜일로부터 5년이다.

2) 동일세번 역외산 원재료의 총 금액이 완제품 금액의 10%이내일 경우 최소허용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산지가 충족된다.

3) 일반적으로는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시 원산지 판정이 용이한 세번변경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였을 때 부가가치 기준을 추가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경우 선택기준 중 하나인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 제85류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8501호-제8503호/제8504.90호/제8505호 제8506.90호/제8507.90호/제8508.70호 제8509호-제8510호/제8511.90호 제8512호-제8515호/제8516.90호/제8517.70호 제8518.90호/제8519호-제8530호/제8531.90호 제8532.10호/제8532.21호제8532.23호-제8532.90호/ 제8533호-제8535호/제8536.20호-제8536.90호 제8537호-제8538호/제8539.90호/제8540.91호 제8540.99호/제8541.90호/제8542.32호 제8542.90호/제8543.30호/제8543.90호 제8544호-제8548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 (40)
제8504.10호-제8504.50호/제8506.10호-제8506.80호 제8507.10호-제8507.80호/제8508.11호-제8508.60호 제8511.10호-제8511.80호/제8516.10호-제8516.80호 제8517.11호-제8517.69호/제8518.10호-제8518.50호 제8531.10호-제8531.80호/제8532.22호 제8536.10호/제8539.10호-제8539.49호 제8540.11호-제8540.89호/제8541.10호-제8541.60호 제8542.31호/제8542.33호/제8542.39호 제8543.10호/제8543.20호/제8543.7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 (40)

※ 참고 : 제85류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는 제85류에 대해 4단위,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다. 특징적인 점은 한-아세안 FTA는 1세번 다품목 원산지결정기준이나 한-베 FTA는 1세번 단일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된다.

(예) 제8508.19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한-아세안 FTA) 가정용의 것과 기타로 구분, (한-베 FTA) 일괄 적용

동일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한-베 FTA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인 반면 한-아세안 FTA는 아래의 예와 같이 보다 엄격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다.

(예) 일차전지(제8506.10호~제8506.80호), 축전지(제8507.10호~제8507.80호), 진공청소기(제8508호), 가정용 전열기기(제8516.10호~제8516.80호), 음향증폭기기(제8518.10호~제8518.30호) 등

2. FTA 활용 가능 대표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물품정보	주요 원재료	산업	전기기기		
		상품명	터치패널		
		품 명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 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 한다)
			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8538	90	메인보드	
		8538	90	전원부보드	
		8538	90	CF Card 보드	
		8302	49	포트브라켓	
		8538	90	USB 연결 보드	
		8538	90	터치센서	
		4016	93	고무가스켓	
		8302	49	LCD브라켓	
		9013	80	LCD	
		8504	40	조명제어 인버터	
		8538	90	LCD 연결 보드	
		3926	90	외함(케이스)	
		3920	99	LCD 보호시트	
		8544	49	케이블	

물품정보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Main PCB 조립-터치부 조립-LCD조립-케이스조립-검품 및 포장			
		①	Main PCB 조립	메인보드, 전원부보드, CF Card 보드, 포트브라켓 등을 조립			
		②	터치부조립	Front 케이스에 USB 연결보드, 터치센서, 고무가스켓 등을 조립			
		③	LCD조립	LCD 브라켓에 LCD 조명제어 인버터, LCD 연결 보드를 조립			
		④	케이스조립	케이스와 Main PCB, 터치부, LCD를 조립 후 LCD보호시트 부착			
		⑤	검품·포장	각종 기능 검사를 거친 뒤 포장			
제8537.10호 한-베 FTA 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 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베트남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1,574만\$	30.55%	15%	5%	15%	0%
제8537.10호 한-베 FTA 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한 세율의 경우 베트남이 15%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과 비교하여 5% 낮아진 0%가 적용되고 있다.			
		CTH or RVC(40)		제8537.10호 수출시 한-베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업체가 터치패널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인 MAIN PCB를 비롯한 터치부조립 공정을 거쳐 LCD를 조립해준 후 LCD 패널 및 메인 PCB와 각종 브라켓을 조립하면 반제품이 완성된다. 우선 터치패널의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자. 제시된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8537.10)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한-베FTA에서 제시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우선 완제품인 제8537.10호의 부분품은 HS 제16부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별도의 4단위 호인 제8538호 독립하여 분류하고 있고 LCD 패널의 경우 제9013호로 분류되는 등 모든 원재료가 완제품 세번과 상이하므로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60류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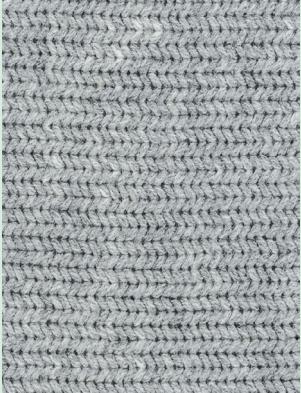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6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 참고: 제60류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분석

제60류에 대해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는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한다.

품목번호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제60류	CTH or RVC(40)	CTH or RVC(40)

2. FTA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물품정보		산업	섬유 및 의류		
		상품명	KNIT FABRIC 편직물		
		품 명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5402	45	NYLON YARN (나일론)	
		44		POLYESTER (폴리에스테르)	

물품정보	주요 원자료	5402	44	SPANDEX FILAMENT YARN (스판덱스)			
		3204	15	DISPERSE DYES (분산염료)			
		4816	90	Transfer Paper (접는 상자)			
	또는						
	주요 제조공정	4819	20	PAPER BOX (상자)			
		주요 제조공정도		편직 - 전처리 - 염색 - 텐터 - 검품·포장			
		①	편직	두 종류의 원사를 번갈아 사용하여 직물을 짜내는 공정			
		②	전처리	편직된 원단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			
		③	염색	편직된 생지를 염색가공하는 공정			
		④	텐터	원단의 폭 및 중량에 맞는 원단으로 가공 및 건조하는 공정			
		⑤	검품 · 포장	가공된 원단의 불량검사 및 개별 포장			
제6004.10호 한-베 FTA 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베트남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3억 3,778만\$	20.31%	12%	10%	12%	0%	
제6004.10호 한-베 FTA 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한 세율의 경우 베트남이 12%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과 비교하여 10% 낮아진 0%가 적용 되고 있다.				
	CTH or RVC(40)		제6004.10호에 분류되는 니트페브릭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100분의 5이상이 함유되어야 하는 편직물이다. 해당물품의 경우 제 32류의 염료 등을 사용하여 염색한 편직물로서, 주요 제조공정으로는 「원사제조 - 편직 - 염색 - 포장」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원재료인 원사(실)의 경우 나일론 원사(HS코드 5402.44) 혹은 폴리에스테르(HS코드 5402.47), 스판덱스(HS코드 5402.44)를 각각 공장에서 생산하며, 이를 공급받아 편직 공정을 진행한다. 이어 염색공정을 진행한 후 완제품을 공급한다.							

제6004.10호 한-베 FTA 활용방안	CTH or RVC(40)	<p>제6004.10호 수출시 한-베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위의 주요 원재료와 완제품의 품목번호를 토대로 원산지를 판단해 보면 4단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p> <p>단, 원재료가 되는 나일론 원사 혹은 스판덱스를 완제품 수출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 수출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외부 업체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임가공을 통해 편직을 하였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로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임가공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p>
------------------------------	----------------	--

■ 제54류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5401호 – 제5406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제5407호 – 제5408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 참고 : 제54류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분석

제54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품목번호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제5401호-제5406호	CC or RVC(40)	CC or RVC(40)
제5407호-제5408호	CTH or RVC(40)	CTH or RVC(40)

2. FTA 활용 가능 대표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물품정보	상품명 품명	산업	섬유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 폴리필라멘트직물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61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이며 염색한 것			
	상품 코드	세부 품명					
주요 원재료	5402	47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3204	11	염료				
		12					
		14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연사준비 – 생지생산 – 염색 – 텐터 – 검사·포장					
	①	연사준비	폴리필라멘트사 상태의 원사 준비				
	②	생지생산	원사로 생지를 제작하는 공정				
	③	염색	염료를 배합하여 염색기를 통해 직물 염색				
	④	텐터	염색된 원단을 규격에 맞게 건조하고 마무리하는 공정				
	⑤	검사 · 포장	염색완료된 원단을 검품하는 과정				
제5407.61호 한-베 FTA 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베트남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9,586만\$	37.40%	12%	0%	12%		
제5407.61호 한-베 FTA 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한 세율의 경우 베트남이 12%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0%가 적용 되고 있다.				
	CTH or RVC(40)						

<p>제5407.61호 한-베 FTA 활용방안</p>	<p>제5407.61호 수출시 한-베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우선,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을 생산하는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자. 제5407.61호에 분류되는 합성필라멘트 직물은 제5402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주 원재료로 하여 제32류의 염료 등을 사용하여 염색·직조한 직물이다. 주요 제조공정으로는 「연사준비 – 생지생산 – 염색 – 건조·열처리 – 검사·포장」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p> <p>만약 업체가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을 생산하기 위한 폴리필라멘트사(5402)를 입고하여 직접 원사로 생지를 생산하는 공정을 거쳤을 경우, 원재료인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5402)와 완제품인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의 4단위 세번(5407)이 다르기 때문에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결정 기준이 충족된다.</p> <p>해당물품의 일반적인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 세번을 고려해 보았을 때, EU, 터키 및 미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충족하기 쉽지 않은 반면, 베트남과 아세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이에 비해 충족이 매우 쉬운 것으로 보인다.</p> <p>제시된 주요 원재료는 제54류에 해당하는 원사들로, 한-EU 및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Yarn forward 규정에 따라 역내산을 사용해야만 하나 베트남과 아세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역외산 원사를 사용하더라도 원산지결정을 충족할 수 있다.</p> <p>즉,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가공만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역외산 원사를 투입, 역내에서 제작공정을 거쳐 직물을 생산하면 원산지결정을 충족하게 된다.</p>
---------------------------------------	---

■ 제62류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6201호 – 제621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 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재단 및 봉제) or RVC(40)
제6213호 – 제6214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 참고 : 제62류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분석

제62류에 대해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는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한다.

품목번호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제6201호 – 제6212호	CC(재단 및 봉제) or RVC(40)	CC(재단 및 봉제) or RVC(40)
제6213.20호 – 제6214.90호	CC or RVC(40)	CC (ex 제5007호, 제5111호-제5113호, 제5208호-제5212호, 제5309호-제5311호, 제5407호-제5408호, 제5512호-제5516호, 제5801호-제5802호, 제60류) +재단 및 봉제 or RVC(40)
제6215.10호 – 제6217.90호	CC(재단 및 봉제) or RVC(40)	CC(재단 및 봉제) or RVC(40)

(유의점) 제6213호와 제6214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한-아세안 FTA는 원재료의 제한과
가공공정기준을 함께 충족하도록 엄격히 규정한 반면, 한-베 FTA는 이를 모두 삭제

2. FTA 활용 가능 대표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물품정보			산업	섬유		
	상품명		의류 고정용 밴드			
	품명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90	부분품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5402	62	폴리에스테르		
		5401	10	합성필라멘트		
	주요 제조공정	5402	44	탄성사		
		주요 제조공정도		나름 - 통경 - 도안 - 시직 - 생산 및 염색 - 가공·롤링		
		①	나름	원사를 빔에 감는 작업		
		②	통경	실(원사)를 하나씩 기계에 끼우는 작업		
		③	도안	글자 및 모양 등을 CAD로 도안하는 과정		
		④	시직	처음 제품을 제작하는 작업		
		⑤	생산 및 염색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원하는 컬러로 염색하는 과정		
		⑥	가공 및 롤링	제품의 구김을 펴주는 과정으로 제품 완성 및 롤링작업		
제6217.90호 한-베 FTA 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베트남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1억 7,773만\$	29.91	20%	10%	20%	0%

제6217.90호 한-베 FTA 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한 세율의 경우 베트남이 20%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과 비교하여 10% 낮아진 0%가 적용 되고 있다. 해당 물품은 아웃도어 상의 또는 하의에 해당하는 바지에 부착하는 고정용 밴드로 직물제의 탄성이 있는 밴드이다. 주로 등에서 교차하여 어깨로 이어져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CTH or RVC(40)	제6217.90호 수출시 한-베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의류 고정용밴드를 생산하는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자. 만약 업체가 의류 고정용밴드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인 폴리에스테르 및 탄성사를 입고·재직하여 직접 가공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재료인 폴리에스테르 및 탄성사 4단위 세번(5402)과 완제품인 고정용 밴드의 4단위 세번(6217)이 다르기 때문에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

■ 제59류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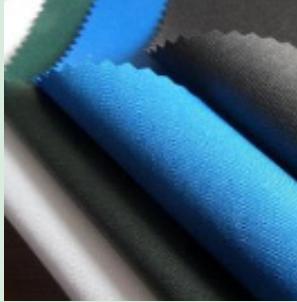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5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 참고 : 제59류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분석

제59류에 대해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는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한다.

품목번호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제59류	CC or RVC(40)	CC or RVC(40)

2. FTA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물품정보			산업	섬유		
	상품명		폴리우레탄 직물			
	품 명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20		폴리우레탄의 것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5407	41	나일론 직물		
	주요 원재료	3204	90	염료		
		3909	50	폴리우레탄레진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원단입고 – 염색 – 건조 · 다림질(텐터) – 코팅 – 검품 · 포장		
		①	원단입고	원단(나일론 직물)을 입고하여 염색기계에 투입		
		②	염색	염료, 물 등을 혼합하여 최대 100°C 온도에서 염색		
		③	건조 · 다림질	염색이 끝난 원단을 건조 후 160°C~170°C 온도에서 다림질		
		④	코팅	폴리우레탄 레진을 원단에 도포한 뒤 최대 160°C 온도에서 코팅		
	제5903.20호 한-베 FTA 활용현황 (2017년 기준)		2017년 대상수출액	2018년 활용률	2017년	2018년
			(베트남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1억 9,336만\$	31.75%	12%	5%
			12%	0%		

제5903.20호 한-베 FTA 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한 세율의 경우 베트남이 12%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과 비교하여 5% 낮아진 0%가 적용되고 있다. 제5903.20호 수출시 한-베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2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해당물품의 주요 원재료인 직물의 경우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1호에 따라 제50류부터 제55류, 제5803호 등 제59류 외의 물품만이 사용되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다. 또한, 또 다른 주요 원재료인 플라스틱 수지는 제39류에 분류되고 기타 염색 등을 위해 투입되는 원재료는 제32류, 제38류 등에 분류되므로 이 또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을 충족하기 용이하다. 한-베 FTA의 경우에는 역외산 원사 및 직물을 사용 하더라도 원재료(원사 및 기본직물)와 완제품의 2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다. 즉, 역외산 직물을 바탕으로 염색가공 및 플라스틱 시트를 도포하는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CC or RVC(40)	

■ 제41류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4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 참고 : 제41류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분석

제41류에 대해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는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한다.

품목번호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제41류	CTC or RVC(40)	CTC or RVC(40)

2. FTA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물품정보 주요 원재료 주요 제조공정		산업	섬유		
		상품명	그레인 스플릿 가죽		
		품 명	4107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9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상품 코드	세부 품명			
		4101	20	전신 원피	
		또는			
	4107	19	SPLIT 원피		
	3207	10	염색약		
	주요 제조공정도		원피가공 – 유연처리·염색공정 – 완성공정		
	①	원피가공	원피 털 제거 및 가공		
	②	유연처리·염색공정	가공된 원피에 색상 염색 공정		
	③	완성공정	염색 가죽 건조 공정		

제4107.92호 한-베 FTA 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베트남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1억 1,520만\$	41.09%	5%	0%	5%	0%
제4107.92호 한-베 FTA 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RVC(40)	<p>해당물품에 대한 세율의 경우 베트남이 5%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0%가 적용되고 있다.</p> <p>제4107.92호 수출시 한-베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우선, 그레인 스플릿 가죽 생산의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자.</p> <p>만약 업체가 그레인 스플릿 가죽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인 전신원피를 입고하여 직접 원피 털 제거 및 염색가공 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재료인 원피 4단위 세번(4107)과 완제품인 스플릿가죽의 4단위 세번(4107)이 따라서 동일 호에 분류된다.</p> <p>4단위 세번(4107)이 같이 때문에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p> <p>만약, 원재료가 역내산(KR)이라면 수출(혹은 생산)업체는 원재료의 공급업체로부터 해당 원재료가 역내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원재료가 역외산이라면 완성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재료의 가격을 통해 최소허용기준 충족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혹시 해당 원재료가 최소허용범위를 초과한다면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p>			

■ 제33류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3301.12호 – 제3301.29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제3301.3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제3301.9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제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제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CTH(ex, 1211.20, 1302.90) or RVC(40) (ex, 1211.20, 1302.90)
제3302호 – 제3307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 참고: 제33류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분석

제33류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한다.

품목번호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제3301.12호– 제3301.29호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3301.30호	CTSH or RVC(40)	CTSH or RVC(40)
제3301.90호	CTH(ex, 제1211.20호, 제1302.19호) or RVC(40) (ex, 제1211.20호, 제1302.19호)	CTH(ex, 제1211.20호, 제1302.19호) or RVC(40) (ex, 제1211.20호, 제1302.19호)
제3302.10 – 제3307.90호	CTH or RVC(40)	CTH or RVC(40)

2. 제33류 FTA 활용 가능 대표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산업	화장품		
		상품명	피부미용 크림		
		품명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 (pedicure)용 제품류
			99		기초화장용 제품류 및 기타
물품정보	상품 코드		세부 품명		
	2201	90	정제수		
	2905	45	글리세린		
	2931	90	사이클로펜타실록산		
	2931	90	사이클로헥사실록산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분산공정 – 유화공정 – 가용화 공정 – 혼합공정 – 분쇄공정 – 충전·포장·성형공정		
	①	분산공정	원료입고 후 원료를 제품 종류에 맞게 혼합(Mixing), 용해시키는 작업 과정		
	②	유화공정	유화장치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혼합, 유화한 후 탈기와 여과 작업을 거친후 실온으로 냉각하여 크림과 같은 유액을 만드는 과정		
	③	가용화 공정	알코올상 원료를 서서히 첨가하여 가용화하고 여과작업을 거친 후 투명한 제품을 얻는 과정		
	④	혼합공정	첨가제 등을 첨가한 후 균일하게 분쇄하는 혼합작업		
	⑤	분쇄공정	혼합공정에서 예비 혼합 입자를 균일하게 분쇄하는 작업		
	⑥	충전·포장·성형공정	내용물의 상태, 용량에 따라 충전기를 사용하고 라벨 부착 등의 포장 및 성형 작업		

제3304.99호 한-베 FTA 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베트남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6,391만\$	33.24%	20%	14%	20%	12%
원산지결정기준			<p>제3304.99호의 MFN 세율은 20%이고, 특혜세율은 2017년 대비 2% 낮아진 2018년 현재 12%이다.</p> <p>피부미용크림은 얼굴 피부에 수분공급을 위한 기초화장품으로 주요원재료는 정제수, 글리세린, 사이클로 등이 있으며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되어 출고된다.</p> <p>제3304.99호 수출시 한-베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위의 주요 원재료와 완제품의 품목번호를 토대로 원산지를 판단해 보면 4단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p>			
제3304.99호 한-베 FTA 활용방안	CTH or RVC(40)		<p>크림의 핵심재료들이 4단위 세번이 모두 완제품인 크림과 상이 하므로 이들 원재료를 모두 수입하더라도 한국에서 충분한 가공 공정을 거쳐 생산할 경우 세번변경기준 충족에 의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고 한-베FTA의 특혜를 통해 수출할 수 있다.</p> <p>한국의 對베트남 화장품 수출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기초화장품제품류(HS코드 3304.99.1000)가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p> <p>화장품 관련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 할 시 유의해야 하는 통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정부는 화장품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으로 구분하고 있어 위생·안전과 관련하여 보건부(MoH) 산하기관인 의약품청(DAV)의 화장품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p> <p>수출시 베트남 의약품청에 제품 등록이 필수요건인데, 취급하는 제품마다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p>			

■ 제56류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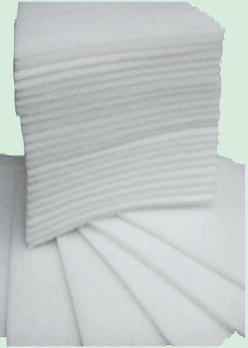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5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C or RVC(40)

※ 참고 : 제56류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분석

제56류에 대해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는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한다.

품목번호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제56류	CC or RVC(40)	CC or RVC(40)

2. FTA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물품정보		산업	섬유		
		상품명	필터원단		
		품 명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4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5911	40	여과포		
	5602	90	펠트 (FELT)		

물품정보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원료준비 - 합지 - 포장 - 출고				
		①	원료준비	원료 준비 단계				
		②	합지	두 가지 원단을 합지하여 필터원단을 제조하는 공정				
		③	포장	완제품을 포장하는 공정				
		④	출고	판매 혹은 수출을 위한 단계				
제5603.14호 한-베 FTA 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수출액 1,825만\$	활용률 20.31%		2017년		2018년		
				(베트남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12%	5%	12%	0%	
제5603.14호 한-베 FTA 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한 세율의 경우 베트남이 12%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과 비교하여 5% 낮아진 0%가 적용되고 있다. 한-베 FTA 부직포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필터원단은 여과포인 메시(MESH)와 방직용 섬유로 여러층 구성된 펠트(FELT)를 합지하여 만든 1제곱미터당 150그램을 초과하는 필터용 원단이다.					
	CC or RVC(40)		우선, 필터원단의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의 충족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자. 만약 업체가 필터원단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인 여과포와 펠트를 합지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재료인 펠트의 2단위 세 번(제56류)과 완제품인 필터원단 2단위 세 번(제56류)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가 중요하다. 원재료중 하나인 여과포는 2단위 세번이 서로 다르므로 역내산·역외산 여부와 관계없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					

제5603.14호 한-베 FTA 활용방안	CC or RVC(40)	<p>그러나 만약 펠트를 역외에서 수입하거나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재료인 펠트와 완성품인 필터원단의 2단위 세번이 동일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p> <p>또한 펠트는 완성품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원재료이므로 최소허용기준의 범위(FOB 10%)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 <p>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p> <p>한-베 FTA는 부가가치계산을 공제법에 따르고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p> <p>여기서 FOB가격이란 본선인도가격을 뜻한다. 그리고 공제법(build-down method)는 비원산지재료의 부가가치를 물품 가격에서 공제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다.</p> $\frac{\text{FOB}-\text{비원산지재료비}}{\text{FOB}} \times 100$
------------------------------	---------------	---

■ 제40류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40류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 참고 : 제40류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분석

제40류에 대해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는 대부분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한다. 다만 제4011.10호, 제4011.20호, 제4011.40호에 대해 한-아세안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55%의 결합기준으로 매우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반면, 한-베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0%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품목번호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제4001.10호 – 제4010.39호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4011.10호 – 제4011.20호	CTH or RVC(40)	CTH+RVC(55)
제4011.30호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4011.40호	CTH or RVC(40)	CTH+RVC(55)
제4011.50호 – 제4011.99호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4012.11호 – 제4017.00호	CTH or RVC(40)	CTH or RVC(40)

2. FTA 활용 가능 대표 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물품정보	주요 원재료	산업	고무제품		
		상품명	고무시트		
		품 명	4005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10	판·시트(sheet)·스트립
		상품 코드	세부 품명		
		4002	20	고무	
		2811	22	파우더	
		2803	00	카본블랙	
		3907	20	폴리에틸렌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	평량 - 고무훈련 - 성형 - 포장 및 출하		

물품정보	주요 제조공정	①	평량	원료 배합공정			
		②	고무훈련	원료 혼합공정			
		③	성형	훈련된 고무를 적정한 두께 및 폭으로 성형하는 공정			
		④	포장 및 출하	판매 혹은 수출을 위한 단계			
제4005.10호 한-베 FTA 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베트남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2,547만\$	38%	5%	0%	5%	0%
제4005.10호 한-베 FTA 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p>해당물품에 대한 세율의 경우 베트남이 5%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0%가 적용되고 있다.</p> <p>제4005.10호 수출 시 한-베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우선, 해당물품은 고무, 실리카파우더, 카본블랙등으로 제조한 시트형태의 배합고무이다. 고무시트 생산을 위한 제조공정과 주요원재료를 바탕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자.</p> <p>만약 업체가 고무시트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인 고무 (HS 제4002호)를 파우더, 카본블랙 등과 배합 및 혼합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재들과 완제품인 고무 시트와의 4단위 세 번이 다르기 때문에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p>					
	CTH or RVC(40)						

■ 제96류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9601호 – 제9607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제9608.10호 – 제9608.4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제9608.50호 – 제9608.99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제9609.1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제9609.20호 – 제9609.9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제9610호 – 제961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제9613.10호 – 제9613.8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SH or RVC(40)
제9613.90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제9614호 – 제9619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 참고 : 제96류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분석

제96류에 대해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는 대체로 동일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한다. 다만, 일부품목(볼펜, 연필, 라이터 등)의 세번에 대해 한-아세안 FTA는 엄격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한-베 FTA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완화하였다.

품목번호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제9601 ~ 9607호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9608.10 ~ 9608.40호	CTSH or RVC(40)	CTH or RVC(40)
제9608.50 ~ 9608.99호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9609.10호	CTSH or RVC(40)	CTH or RVC(40)
제9609.20 ~ 9609.90호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9610 ~ 9612호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9613.10 ~ 9613.80호	CTSH or RVC(40)	CTH or RVC(40)
제9613.90호	CTH or RVC(40)	CTH or RVC(40)
제9614 ~ 제9619호	CTH or RVC(40)	CTH or RVC(40)

2. FTA 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물품정보	상업	잡품		
		지퍼		
	품명	9607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 지퍼
		19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물품정보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9607	20	슬라이더 바디					
		9607	20	체인					
제9607.19호 한-베 FTA 활용현황 (2017년 기준)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금속 가공 – 지퍼미싱 작업 및 우레탄 필름 부착 – 슬라이더, 지퍼, 막음쇠 조립					
		①	금속가공	도금된 금속을 가공하여 슬라이더와 판박스 제작					
		②	지퍼미싱작업·필름부착	지퍼테이프와 지퍼 이빨 미싱 작업 후 우레탄 필름 부착					
		③	조립	슬라이더, 지퍼, 막음쇠 등을 조립					
제9607.19호 한-베 FTA 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대상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베트남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2,541만\$	16.80%	20%	14%	20%	12%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한 세율의 경우 베트남이 20%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 대비 2% 낮아진 12%가 적용되고 있다. 제9607.19호 수출시 한-베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지퍼 생산의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자. 해당물품의 주요 원재료는 슬라이더바디와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제9607.20호에 해당하는 슬라이더파스너 부분품이다.					
		CTH or RVC(40)		만약 업체가 지퍼를 생산하기 위한 슬라이더 바디와 체인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원재료인 부분품들이 같은 제9607호 상에 분류되기 때문에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한다.					

제9607.19호 한-베 FTA 활용방안	CTH or RVC(40)	9607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9607.19 기타
		9607.20 부분품
<p>만약, 원재료가 되는 바디와 체인을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원재료들이 동일 호(제9607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역내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p> <p>그러나 원재료가 역외산이라면 완성품은 원칙적으로 세 번변경 기준을 충족시킬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p> <p>이때는 원재료의 가격을 통해 최소허용범위 충족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혹시 해당 원재료가 최소허용범위를 초과한다면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될 수 있다.</p>		

■ 제64류

1.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및 해설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
제64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CTH or RVC(40)

※ 참고 : 제64류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분석

제64류에 대해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는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한다.

품목번호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제64류	CTH or RVC(40)	CTH or RVC(40)

2. FTA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결정기준 해설

 물품정보	산업	생활용품		
	상품명	갑피의 부분품		
	품명 품명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10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3920	99	인조가죽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		원단 – 가공 – 재단 – 검사 · 출고	
	①	원단	가죽이나 직물의 원단 입고	
	②	가공	가죽이나 직물의 원단을 1차 가공	
	③	재단	가죽이나 직물의 원단을 틀(라스트)에 맞춰 신발 모양을 만드는 작업	
	⑥	검사 · 출고	불량품 여부 검사 및 출고	
제6406.10호 한-베 FTA 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베트남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2,059만\$	22.66%	15%	0%
			15%	0%

제6406.10호 한-베 FTA 활용방안	<p>원산지결정기준</p> <p>제6406.10호의 2017~2018년 MFN 세율은 15%이고,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0%이다.</p> <p>제6406.10호 수출시 한 베트남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호의 원산지결정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우선, 신발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갑피의 부분품에 대하여 한-베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피의 부분품 생산의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자.</p> <p>갑피의 부분품은 신발의 소재에 따라 핵심원재료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제시된 사례는 인조가죽과 소가죽으로 구성된 경우이다.</p> <p>사례의 핵심원재료 내역과 HS코드, 원산지 지위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해 보면 우선 원재료가 모두 비원산지재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인조가죽과 소가죽의 4단위 세번과 갑피 부분품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된다.</p> <p>따라서 갑피부분품을 생산할 때 인조가죽과 소가죽 모두 역외에서 수입하여도 한국에서 충분한 공정과정을 거쳐 제조하면 한-베 FTA에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p> <p>갑피부분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p>
------------------------------	--

제Ⅱ장

베트남의 통관 법제도

제1절
통관제도

제2절
최근 통관 이슈



제1절 통관제도

1. 통관조직 및 법령

■ 통관조직





■ 주요 통관법령



2. 통관절차

■ 수입 통관절차

화물도착 및
수입신고

- 세관신고 구비서류 : 세관신고서, 인보이스, 계약서, 허가서, 기타 법률이 정하는 서류
- 세관신고서 제출 : 화물도착 30일 이내, 수출 출경 4시간 전까지
- 세관신고 방식 : 전산신고(E-Customs) 또는 종이서류 신고
- 자동수입허가 물품 : 수입전 산업무역부에 허가 신청

심사 및 검사

- **Green Flow** : 전자신고(E-Customs) 수리 가능,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면제
- **Yellow Flow** : E-Yellow Channel(전자서류), Paper-Yellow Channel(종이서류)
- **Red Flow** : 서류심사(종이서류) 및 물품검사

관세납부

- 관세는 물품 ‘반출전 즉시 납부 대상’, ‘반출후 납부대상(납부유예)’을 구분해 세금 납부
- 전자신고를 통해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시 월별 수수료 납부
- 관세 = 관세가격 × 적용세율
- 사전심사제도 활용 : 수출입품의 HS코드, 원산지, 관세가격을 사전확인, 불이익 사전예방

화물반출

- 통관절차 미완료이나 화물반출 가능 : 30일 이내 보완(우대기업, 국방 등)

자진신고 및
세무조사

- 수출입신고 자진수정 : 세관신고서 등록일부터 60일 이내 부족세액 및 지연이자 자진납부 가능
- 60일 이후 오류발견으로 부족세액 및 지연벌금 자진납부 → 관세당국 사후조사에 의한 가중처벌 면제
- 통관후 세무조사 : 세액·무역사기 및 수출입 규정 위반의 가능성 → 신고서 등록일부터 5년 이내 세무조사

■ 수출 통관절차 - 부품·소재 수입가공 후 수출



● 관세납부시 고려사항

- 과세시점 : 과세시점은 세관신고서 등록 시점부터 계산
- 납부기한 : 관세는 물품 '반출전 즉시 납부대상', '반출후 납부대상'을 구분해 세금 납부, 우대기업은 최대 40일 이내 납부
- 과세가격 산정 : 수출품 가격(국경관문에서 판매되는 가격), 수입품 가격(최초 반입 국경관문에서 실제 지불하는 가격), 적용환율(베트남 중앙은행이 과세시점에 발표한 고시환율), 적용세율(MFN 우대세율, FTA 특혜세율, 일반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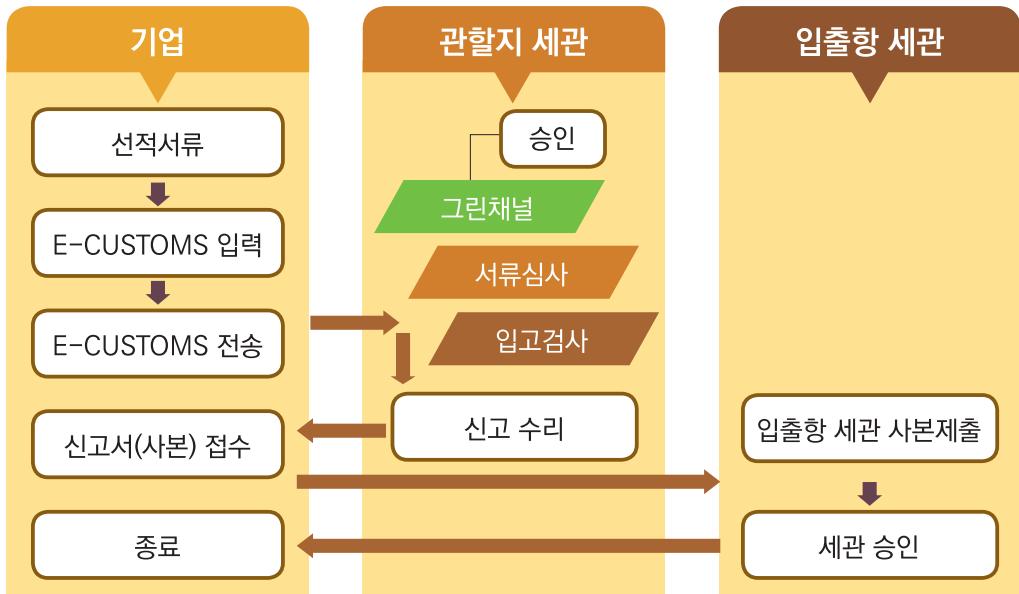
- 품목분류 : 아세안 공동사용 AHTN 8단위 HS코드 분류방식 적용
 - ❖ 신고자가 분류하나, 관세기관이 불인정시 재검토 필요 → 관세기관 판정에 불복시 신고자의 민원제기 가능

● 관세납부 면세혜택

- 수출가공구(EPZs) 입주 : 비관세지역, 경제구(수입세 5년 면제)
- 수출가공기업(EP기업) 지정 : 투자허가서상 명시 필요
- 세액징수 유예제도 : 기한규정 폐지, 면세로 변경 → 적용 원자료의 재고관리 필수
- 기타 : 영업용 보세창고, 자가용 보세창고, 임가공, 일시 수출입(재수출입)

● 전자통관시스템(E-CUSTOMS) : 자동화물승인시스템(VNACCS)·통관정보DB(VCIS)^{4) 5)}

- VNACCS와 VCIS는 통관창구와 행정절차를 통합한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세관, 수출입기업, 관련 정부부처, 물류회사 등이 이용 가능
- 2016년 베트남 세관 및 상공회의소는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으로 통관비용은 약 10~20% 감소, 통관시간은 약 30% 단축되었다고 발표



4) Circular 22/2014/TT-BTC

5) VNACCS: Vietnam Automated Cargo System, VCIS : Vietnam Customs Intelligent Database System

3. 기타제도

■ 가공수출, 임가공수출, 국내수출

● 가공수출

- 수입전 가공수출 기업으로 등록
- 수입시 관세·부가세 면제 가능

● 임가공수출

- 수입전 임가공계약 체결 완료, 임가공계약 물품과 수입 원재료 등록
- 수입시 관세·부가세 면제 가능
- 수출가공기업(EP기업)과 달리 자격·지위 획득 불필요

● 국내수출

- 한국기업 A와 임가공계약 관계인 로컬기업 B는 한국기업 A와 물품판매계약 관계인 로컬기업 C에게 국내 물품이동 가능

■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유예제도

● 수출목적 수입 원재료의 관세유예 적용⁶⁾ 대상

-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구성품·부분품·반제품
- 수출물품과 조립되거나 포장되어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는 완제품
- 보증기간 내 수출물품의 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구성품과 부분품
- 거래되거나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샘플

● 수출목적 수입 원재료의 관세유예 해당 조건

- 수출물품의 제조자는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기 적합한 기계·장비를 갖춘 베트남내 공장을 소유 또는 공장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해야하며, 관세당국에도 신고 필요
- 수입된 원재료는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

6) Law No.107/2016/QH13, Decree No.134/2016/ND-CP

● 관세가 면제되는 수출용 원재료의 금액 또는 수량은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실제 소요된 금액 또는 수량

- 관세 유예적용을 위해 세관에 신고된 BOM을 근거로 관세 면제적용 수출용 원재료의 금액 및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과정에서 소요된 BOM을 근거로 관세 면제 적용여부가 결정

● 기타 사항

- 실무적으로 불량품, 폐기품을 포함한 로스율(3%)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 관세 추징이 빈번히 발생
- 생산공장 소유 또는 사용권 보유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임가공을 통해 전체공정 또는 일부공정이 수행되면 관세면제 비대상

■ 수출가공기업 (EP기업: Export Processing Enterprise)

● EP기업은 보세구역인 수출가공구(EPZs) 내에 설립되어 생산물을 수출하는 기업

- 자격조건 : 펜스·출입문 등으로 외부영토와 분리, 세관 및 관련 기관의 검사가 가능, 해외수출 목적

● 일반적으로 EP기업이 수출품 제조를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통관절차 진행

- 수출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수입관세·부가세 면제, 수출품의 수출관세 면제
- 분기별 정산결과 및 연차보고서(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보고) 제출

● 예외적으로 수입통관이 생략되는 경우

- 동일 EPZs의 EP기업간 거래되는 물품·사무용품·식료품·소모품
- EP기업의 본사 및 계열사간 거래(독립된 회계처리 필요)
- EP기업이 수리·분류·포장·재포장 목적으로 입·출고한 물품(입출고 대장 별도 관리)

● EP기업과 내수기업간 거래

- 내수기업 → EP기업 : 내수기업이 수출통관, 수출세 부과 가능
- EP기업 → 내수기업 : 내수기업이 수입통관 및 수입관세 지불⁷⁾, FTA 적용불가

● 유통을 위한 물품의 통관절차

-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 관세·부가세 납부
- 수출품 제조를 위해 수입된 물품과 구분해서 관리

■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

●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AEO, 베트남어약자 DNUT)

- 베트남 관세총국의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AEO, DNUT)⁸⁾는 성실한 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2017년 6월 기준 공인된 기업은 베트남 내 총 60개(한국기업 11개)
- 현재 한국과 베트남의 관세청에서는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준비중

AEO
선정요건

- 최근 2년간 관세 및 기타 세법 규정을 준수
 - ✓ 탈세, 포탈, 밀수 등의 행위가 없어야 하며, 체납된 세금이 없을 것
- 회계관리 및 감사와 관련 규정 준수
 - ✓ 베트남 재무부에서 규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 장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아야 함
- 내부통제체계 마련 및 운영
 - ✓ 수출입화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할 것
- 직전 2년간 거래 실적 보유
 - ✓ 연간 1억 달러 이상 수출입 실적 또는 연간 4천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 보유 제조기업
 - ✓ 연간 3천만 달러 이상 농산물 수출실적 보유기업
 - ✓ 연간 2만 건 이상 신고실적 보유 통관대행업체

7) Official Letter No.66/TCHQ-TXNK

8) Decision No.2659/QD-TCHQ

AEO 기업의 신청·연장·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시 제출서류 :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급세관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직전 2년간의 수출입실적 보고·분석서, 통관·납부 적법성 보고서 ✓ 직전 2년간의 재무제표와 감사결과보고서, 내부통제시스템의 설명 및 점검 결과서, 기타 회사의 수상내역 또는 자격사항 등 • 처리기한 :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하며, 30일 추가 연장가능 • 유효기간 : 기본 3년이며, DNUT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 갱신 • 정지 및 취소 : DNUT의 요건을 불충족하거나,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AEO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시 서류 및 물품 검사의 면제로 신속통관 가능(불충분한 서류로도 30일 이내 보완조건으로 통관가능) • 세관 통관절차에 있어 우선권 부여 • 관세 환급 신청 시 ‘先환급 後검사’ 가능 •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등으로부터 간접수입 시 ‘先수입 後신고’ 가능 • 통관 후 사후심사 면제(단, 3년에 1회 심사), 최대 40일까지 관세납부 유예(익월 10일까지 납부)

제2절 최근 통관 이슈

■ 2018년 관세법 시행규칙⁹⁾ 개정

● 자재명세서(BOM) 제출 의무화

- (前) BOM 관리·보관 의무 → (後) BOM 제출 의무¹⁰⁾
- (유의) BOM을 통한 수량대사가 가능해져 세관의 소명요청 및 관세추징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전자문서교환(EDI)¹¹⁾ 연계 이슈 발생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새롭게 포함된 항목의 데이터를 세관에 전송해 EDI 연계하도록 규정¹²⁾
 - ❖ EDI 연계는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
 - ❖ EDI 연계시 정산보고 서류인 원재료 수불부, 완제품 수불부, Actual BOM 제출 면제가 가능
- EDI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정산신고의 대상과 방법 변경

- (前) 금액기준 → (後) 수량기준
- 원재료와 완제품의 수불부(受拂簿) 서식 구분
 - (前) 동일 양식¹³⁾에 원재료와 완제품을 함께 기재 →
 - (後) 별도 양식에 원재료와 완제품의 수불부¹⁴⁾를 각각 기재
- 원재료와 완제품의 출고 유형별 제출 항목 세분화
 - (前) 제출 항목이 4개(Opening stock, Purchased, Used, Ending stock)로 단순 →
 - (後) 제출 항목을 출고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

9) Circular No.39/2018/TT-BCT

10) Circular No.39/2018/TT-BCT, 제60조 1항 및 2항 b)

11) Electronic Data Interchange

12) Circular No.39/2018/TT-BCT, 부록 II, 서식 제30호

13) Form No.15/BCQT/GSQL

14) Form No.15a/BCQT-SP/GSQL

❖ 개정전 서식

**STATEMENT OF RAW MATERIALS, SUPPLIES, FINISHED PRODUCTS
DERIVED FROM IMPORTED GOODS**

[Year]

STT	Account	Name, specifications of materials/goods	Amount (VND)				Note
			Opening stock	Purchased	Used	Ending stock	
(1)	(2)	(3)	(4)	(5)	(6)	(7)	(8)
1		Imported materials	500	200	300	400	
2		Finished products derived from imported goods	100	300	150	250	

❖ 개정후 : 원재료 수불부

SETTLEMENT REPORT FOR GR-GI-INVENTORY OF MATERIALS

Report term: From date to date

No.	Material code	Material name	Unit	BOH Qty	GR Qty	GI Qty				EOH Qty	Remark
						Return	Qty of Change usage purpose, scrap	GI for production	Other GI		
(1)	(2)	(3)	(4)	(5)	(6)	(7)	(8)	(9)	(10)	$(11) = (5) + (6) - (7) - (8) - (9) - (10)$	(12)

❖ 개정후 : 완제품 수불부

SETTLEMENT REPORT FOR GR – GI – INVENTORY AT EXPORT PRODUCT WH WHICH IS MANUFACTURED FROM IMPORT MATERIALS

Report report: From date To date

No.	Product code	Product name	Unit	BOH Qty	GR Qty	GI Qty			EOH Qty	Remark
						Qty of Change usage purpose, scrap	Export Qty	Other GI		
(1)	(2)	(3)	(4)	(5)	(6)	(7)	(8)	(9)	$(10) = (5) + (6) - (7) - (8) - (9)$	(11)

■ 2018년 원산지확인제도 도입

● 원산지확인서 제도¹⁵⁾ 도입으로 수출자의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 원산지확인서는 최종 수출품의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원재료/중간재의 생산자/공급자가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서류
- 최종 수출품의 수출자는 원산지확인서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원산지 관리 및 입증 부담의 경감, 원산지 증명 절차의 간소화 가능
 - ◆ (체크사항) ① 원산지 포괄확인서의 기능이 없는 일회성 사용 가능, ② C/O 발급시마다 원산지확인서 제출, ③ 특혜(FTA) C/O와 비특혜(일반) C/O 모두 활용 가능, ④ 아세안물품무역협정(ATIGA)의 C/O(FORM D)의 원산지 입증서류로 활용 불가
- 최종 수출품의 원재료 및 중간재 공급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ECOSYS)¹⁶⁾에서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 양식에 작성 후 서명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자인 수출자에 제공



15) Decree No.31/2018/NĐ-CP, Circular No. 05/2018/TT-BCT

16) Circular No.05/2018/TT-BCT의 Appendix X 참고

❖ 베트남 원산지확인서 양식(영어 번역본)

Appendix X
ORIGIN DECLARATION OF DOMESTIC MANUFACTURERS AND DOMESTIC MATERIAL SUPPLIER

(issued together with Circular no.05/2018/TT-BTC dated 03 April 2018 on Elaboration on Goods Origin)

Manufacturer Name: Company:

Business code:

Quantity:

FOB value:

VAT invoice No.:

(Name of the domestic company / manufacturer of raw material) confirms that the material / product (1)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the HS code of 6 numbers) stated in this document is produced at our company's factory at (2) in Vietnam originating from Vietnam and can meet the criterion of origin (3) as prescribed in the Chapter of Rules of Origin in (4)

The company guarantees that the above mentioned information is correct and takes all responsibility for the declared information

... day ... month ... year 20 ..
Legal representative of the trader
(Signature, seal, full name)

Note:

- This form is applicable to originating materials / goods made in Vietnam and used as inputs for the next stage to produce another export goods of the trader. (except for form D)

- (1) In case there are many materials / products to be declared, the enterprise can make list and attach to this document.
- (2) Address of manufacture or factory of Vietnamese company
- (3) Specify origin criteria (EX: CC/RVC...%)
- (4) Specify name of FTA / Decree ... (Ex: VKFTA/Annex I circular ...)

■ 원산지증명서

● 베트남 관세총국에 정식 통보된 한국 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만 인정

- 2018년 4월 관리감독국은 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상공회의소)의 인장(seal)과 담당자의 직인만 인정한다고 발표¹⁷⁾
 - ❖ (체크사항) 서명 또는 직인의 진위여부를 이유로 정상 발행된 C/O가 불인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원산지증명서와 세관신고서의 HS코드 불일치 유의

- C/O와 세관신고서의 HS코드가 불일치하면, 베트남 관세지국은 세관신고서를 기준으로 C/O의 유효성 결정^{18) 19)}
 - ❖ (체크사항) C/O와 세관신고서간 HS코드가 불일치 → 동일 물품임이 인정되면 해당 C/O 인정, 동일 물품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C/O 거절
- 베트남 관세총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²⁰⁾를 신청하거나 관련 물품의 수입통관 이력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

※ 참고 : 베트남 관세총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목적 : 베트남 관세총국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HS코드, 원산지, 관세가격의 사전확인
- 대상 : 수출입거래 이력이 없는 물품 또는 품목분류에 이견 발생이 예상되는 품목에 활용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수출입 물품 샘플, 관련 입증서류, 기술사양서, 사진 등
- 소요기간 : 30일 (품목의 복잡성에 따라 60일까지 연장 가능)
- 유효기간 : 3년

● 한-베 FTA, Reference Code로 인해 재발급 C/O가 거부되지 않음

- 2018년 3월 베트남 관세총국은 한-베 FTA의 C/O Reference Code를 사유로 C/O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발표²¹⁾
 - ❖ 한-베 FTA 협정문에서 C/O의 Reference Code를 규정하지 않고, C/O 발급기관이 관리차원에서 Reference Code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Reference Code 관련 사유로 C/O를 거부하지 않기로 합의
- 2017년 9월부터 상공회의소에서 관련 C/O 재발급 시 Reference No.는 변경되지 않고 Reference Code만 변경

17) Official letter No.1085/GSQL-GQ4

18) Circular No.38/2015/TT-BTC

19) Official letter No.1079/GSQL-GQ4

20) 관세법 54/2014/QH13 제28조

21) Official letter No.1464/TCHQ-GSQL

※ 참고 : 기타 C/O 거부 가능 사유

- 한-아세안 FTA와 한-베 FTA의 제3국 송장은 C/O의 ‘Non-Party Invoicing’ 미표기
- 한-아세안 FTA C/O의 발급번호(Reference No.)란에 ‘See Notes Overleaf’ 미표기
- 제3국 송장의 경우 C/O의 “Third Country Invoicing” 항목을 체크하고 제7란에 발행회사의 이름·국가 정보를 미기재
- 제3자 발행 인보이스·Back to Back C/O·소급발급 C/O 미표기
- 제1란에 수출자 정보 미표기
- 수출자 서명 미표기
- 비당사국 경유 운송 시 원상태 보증서류, 수출국 발행 (통)선하증권이 없으면 C/O 거부

■ 사후적용

● 한-베 FTA의 사후적용 기간 및 절차 명확화²²⁾

- (사후적용 기간) 한-베 FTA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그 외 FTA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 ❖ 수출품의 세율이 한-아세안FTA와 한-베 FTA가 동일하더라도 사후적용 기간을 고려해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
- (사후적용 사전신고) 수입신고시 사후적용 예정임을 사전신고하지 않으면 한-베 FTA 사후적용 불가

● FTA 사후적용, C/O 형식요건 심사강화 지침²³⁾

- 2017년 12월 이후 FTA 사후적용 관련 C/O 형식요건의 심사 강화
 - ❖ 통관시 C/O 소지 → 세관신고서상 C/O 발급날짜, 참조번호 등 신고
 - ❖ 통관시 C/O 미소지 → 사후 보완하여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신고
 - ❖ 동일한 C/O 상 여러종류의 물품(HS코드 기준)은 신고할 수 있으나, 각 물품별로 적용되는 협정세율의 검토가 가능하도록 수량·가치·원산지기준을 세부적으로 기재

22) Notice No.13959/BTC-TCHQ

23) Official Letter No.8382/TCHQ-GSQL

■ 하역

● 수입물품 가격에 일부 운송관련 비용 추가

- 2018년 3월부터 수입물품의 일부 하역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²⁴⁾ 기업의 관세 및 부과세 부담이 증가
 - ❖ 베트남 정부는 해당 비용들에 대하여 수입항 도착 전에 발생한 운송 비용으로써 수입물품에 지급되었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설명
 - ◆ 베트남 정부는 각 지역세관에 업체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통관시 검사 및 사후검사를 강화해 누락된 운송비용을 추가 신고하도록 지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하역비용인 컨테이너 수급불균형 완화비용(CIC/EIS),

컨테이너 청소비(CCC), 화물인도 지시서 발급비용(D/O)이 포함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 × 10%)

■ 라벨링

● 베트남 국내 수입·유통·생산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²⁵⁾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6월 1일(2019년 6월 1일 이전까지 2년간 유예기간 적용)• 발효일 이전에 생산·수입·유통된 라벨링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사용 가능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베트남내 생산, 수입, 유통 제품• 필수표기사항 : ① 제품명, ② 상품책임자(이름·주소), ③ 원산지, ④ 시행령 부록1의 세부정보*• 위치 :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봉인된 컨테이너는 레이블 표시• 글자크기 : 1.2mm 이상, 80cm 미만 용기는 0.9mm 이상• 제외대상 : 부동산, 임시수입물품·운송중물품·환적물품, 선물증정물품, 경매목적 압수물품, 신선식품·미가공식품·미포장가공식품, 원자재(농수산물, 광산물), 연료(석유·가스), 건축자재(벽돌·타일·모래, 시멘트), 중고품, 안보·국방 관련 제품 등• 언어 : 베트남어(예외: 베트남어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는 외국어 표기)• 보조라벨: 원본라벨 정보와 일치

◆ 시행령 부록1의 세부정보

식료품(수량, 제조일, 유효기간, 경고), 화장품(수량, 성분 또는 성분량, 로트번호, 제조일 및 유효기간, 사용법, 경고), 의료기기(의료기기 유통번호 혹은 수입라이선스 번호, 로트번호 혹은 제품일련번호, 제조일 및 유효기간, 사용 방법, 보관 방법, 보증 조건, 경고) 등

24) Decree No.08/2015/NĐ-CP와 Circular No.39/2015/TT-BTC에 근거하고 있음. 각각 2015년 1월 21일 및 2015년 3월 25일부로 발효한 규정임. 이에 따라 관련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수정신고 시 2015년 신고분부터 수정신고 및 관부가세 추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함.

25) Decree No.43/2017/NĐ-CP

●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적용품목 확대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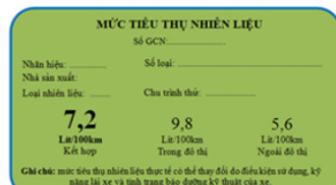
- 2017년 4월부터²⁷⁾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품목이 5개 신규 추가*
- 신규 추가 품목을 생산하는 베트남 국내 생산자 혹은 수입자는 제품이 출시되기 전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에너지라벨 발급신청
- 신규 5개 품목의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이행시기는 2020년 1월 1일까지 유예, 자발적 이행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정용 기기	사무용·상업용 기기	산업용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관 형광등, 콤팩트 형광등 • 형광등용 전자 및 전자기식 안정기 • 에어컨, 냉장고, 가정용 세탁기 • 전기밥솥, 선풍기, 텔레비전 • LED등* •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 상업용 냉장고 • 노트북 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전용 변압기 • 전동기



차량

- 9인승 이하 승용차
- 오토바이*
- 원동기장치 자전거*



녹색 에너지라벨
 • 차량등록검사국(Vietnam Register)이 발급
 • 차량등록검사국의 연비 테스트 결과가 표시



황색 에너지라벨
 • 자동차 제조사·수입사가 발행
 • 자동차 제조사가 실시한 연비 테스트 결과가 표시
 • 차량등록검사국은 연비 테스트 관련 서류와 테스트 방식에 대해서만 검토

26) 산업무역부가 3개 제품군(가정용기기, 산업용기기, 사무용·상업용기기), 교통부가 1개 제품군(차량)에 부착하는 에너지라벨 제도를 관리 감독

27) Decision No.04/2017/QD-TTg

● 식품 라벨링 규정 완화

- 2018년 2월부터 신규 식품 대상 라벨링 규정 도입²⁸⁾
 - ❖ (과도한 규제조항 삭제) 사용기한 표기 문구, 라벨상 표기 의무사항, 상품명 글자크기, 라벨위치 등의 규제 삭제
 - ❖ 의료용 영양식품·특수 식이용 식품·수입 상품에 대한 의무 표기문구, 표기사항만 규정
- 의무 표기사항 면제조항이 신설돼 표기규정 이행에 대한 기업부담이 다소 완화
 - ❖ (면제조항) 보조라벨 부착면제(개인 소비, 선물 용도로 베트남 입국자가 반입한 관세 면제 한도 내의 상품, 테스트 및 연구용 샘플 등), 일부표기사항 면제(최대 표면적이 10cm² 미만인 소형 포장물 등), 생산일 표기 면제(식품용기, 식품접촉 포장재 등)
 - ❖ 식품 라벨링 의무 표기사항은 아래 표 참고

의료용 영양식품	“Thức phẩm dinh dưỡng y học(의료용 영양식품)”과 “Sử dụng cho người bệnh với sự giám sát của nhân viên y tế(의료 요원의 관리를 받는 환자에게 사용)” 문구를 의무표기
특수 식이용 식품	“Sản phẩm dinh dưỡng (cho đối tượng cụ thể) (구체적대상자명시)를 위한 영양상품” 문구를 라벨 정면표기
수입식품	생산자(개인 또는 단체)명과 주소, 상품 공표자(자체적 상품 공표 또는 상품 공표서 등록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명과 주소를 표기

■ 품질검사

● 품질검사 의무화 품목리스트 폐지 및 부처별 품질관리 강화

- 2017년 10월 ‘품질검사 대상 제품·재화 리스트²⁹⁾’의 114개 품목에 대해 수입통관 전 품질검사가 폐지³⁰⁾
 - ❖ 수입통관전 품질검사 제외 114개 품목은 각 관할부처별로 확인이 필요
 - ❖ (예시) 보건부 – 일반 진단용 X-Ray 기기, 결핵백신 등, 농업농촌개발부 – 식물용 성장촉진제, 축산사료, 요소비료 등, 교통부 – 크레인, 지게차, 오토바이, 운전자 포함 10인용 이상 차량 등, 과학기술부 – 오토바이용 헬멧 등의 품목을 관할
- 리스트가 폐지된 가운데, 부처별로 ‘제품·재화 품질법’의 품질관리 대상인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 또는 ‘Group-2 품목(기술규정에 의해 엄격한 품질검사 실시)’을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제정

28) Decree No.15/2018/ND-CP

29) Law No.05/2007/QH12; Decision No.50/2006/QD-TT

30) Decision No.37/2017/QD-TTg

■ 안전검사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간소화 및 면제대상 확대

- 2018년 2월 식품안전 관련 신규 시행령³¹⁾은 동일 선적된 수입식품의 안전검사 절차 간소화
 - ❖ (신설 원칙) 관할부처가 상이한 다수식품이 포함된 동일 선적분에 대해 농업농촌개발부 지정기관이 검사 주관 → 식품 안전검사 시간 단축
- 수입식품 검사방식(일반검사·약식검사·엄격검사)의 간소화
 - ❖ 일반검사: (前) 서류검사 외 표본추출 검사, 라벨링·포장·보존상태 검사 → (後) 서류검사만 규정
 - ❖ 약식검사: (前) 국가 검사기관 → (後) 세관(검사후 통관 바로 진행)
- 식품안전 국가검사 면제대상 확대

※ 참고 :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검사 면제대상

- ① 상품공표서 등록접수증 취득 원료 물품*
- ② 베트남 입국자에 의해 반입된 물품, 입국자가 여행 전후에 발송한 일상생활 또는 여행용도의 물품 또는 관세면제 한도 내의 선물용 물품
- ③ 외교특권과 면제지위가 부여된자 개인용으로 반입된 물품
- ④ 국경통과, 환적, 환승, 일시수입, 재수출 및 보세 창고행 물품
- ⑤ 테스트·연구샘플로 개인·단체가 인증한 시험·연구목적에 적합한 수량의 물품
- ⑥ 전람회 및 박람회 전시용 물품
- ⑦ 수출품 생산·가공을 위해 수입된 상품·원료 또는 개인·단체의 내부 생산용으로서 베트남 내수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상품·원료*
- ⑧ 면세점 판매를 위해 일시수입된 상품*
- ⑨ 베트남 정부 및 종리지시에 따라 긴급한 필요를 위해 수입된 물품

*는 면제확대 대상

● 동·식물성 수입 식품원료 규정 신설

- 2018년 2월부터 식품 생산용으로 수입되는 육상·수생 동물 및 식물제품의 원산지 및 생산시설 관련 일정요건 요구³²⁾
 - ❖ 가공포장 식품, 베트남 기업이 해외수출 후 재반송된 식품, 식품안전국가 검사면제대상은 동 규정 이행 대상에서 제외

31) Decree No.15/2018/ND-CP

32) Decree No.15/2018/ND-CP

※ 원산지요건

베트남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안전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으로의 동·식물성 식품 수출 등록국 리스트’에 등재된 국가 및 영토 요건

※ 식품 생산용 육상 및 수생동물 제품에 대한 생산시설 요건

베트남 관할기관이 베트남 규정에 따른 식품안전 요건 충족시설로 공인한 생산시설 요건

- 수입된 동물 및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입품은 각 선적분에 대해 수출국 관할기관이 발급한 식품 안전성 보증 인증서 첨부 요구
 - ❖ 해외 어선이 포획·해상 가공해 베트남에 직접 판매한 수산물은 제외
- 대베트남 동·식물성 식품 수출국가 및 수출시설의 등록절차

서류제출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제출
- 제출서류는 시행령 양식 참고
- (양식 I-8) 신청국의 식품안전체계 정보
- (양식 I-7) 신청국의 동물성식품 사업체 리스트
- (양식 I-9) 등록신청 사업체의 식품안전 관련 시설 및 위생 관리

서류심사

등록국가 및 시설 리스트 공표

- 요건 미달시 사유가 명시된 심사결과 통보
- 사업체 추가시 서류(I-8번, I-7번)를 농업농촌개발부에 재송부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실사 계획 통보

- 서류 접수일 기점 30일 이내(근무일 기준) 서류심사 결과 통보
- 수출국 현장실사는 필요시 실시, 결과 통보는 수출국 현장실사 종료일 기점으로 30일이내(근무일 기준) 완료

제Ⅲ장

베트남의 통상 법제도

제1절

산업별 수출 환경

제2절

최근 수출입 정책의 변화

제3절

최근 품목별 주요 수출입 이슈



제1절 산업별 수출 환경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자본재 및 원자재가 꾸준히 견인

- 국내 전기·전자 대기업 및 협력업체의 대규모 투자진출에 의해 자본재(61%) 및 원자재(31%)의 수출비중이 약 90% 수준
 - 베트남 정부는 제조업,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³³⁾에 따라 관련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
 - 한국은 포스트 차이나인 베트남의 1위 투자진출국
 -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에 따르면,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1988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투자건수 6,883건, 총 투자금액 595억 달러 기록
- 반면, 소비재 수출비중은 작은 수준이나, 한류 등으로 증가 예상

■ 전기·전자

- 베트남은 주요 전기·전자 기업(삼성, LG, MS, 인텔 등)들의 투자진출로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우리기업들이 베트남 전자기기 시장을 선도
 - 2017년 베트남 수출품목 1위는 휴대폰·부품, 3위는 컴퓨터·전자제품
 - 삼성전자의 對베트남 투자규모는 약 173억 달러, 전체 수출의 25% 차지,
 - ❖ 2017년 베트남 500대 기업 중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1위 선정

33) 2014년 6월 「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Decision 879 QD-TTg)

■ 섬유·의류

● 베트남은 전세계 섬유·의류 부문 7위 수출국이며, 2017년 섬유·의류는 2위 수출품목에 해당

- 한국은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출시장의 10% 이상 차지
 - ❖ 2016년 기준 베트남 진출 섬유·의류 한국기업은 총 763개이며, 총투자금액은 약 20억 달러(전체 섬유·의류업 FDI 기업의 약 35%)
- 베트남은 섬유·의류 원부자재 생산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베트남 정부는 관련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

■ 자동차·부품

●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외국 자동차 제조사의 베트남 투자가 확대

- 외국자동차 제조사의 베트남 직접투자 계획으로 중국 Sailun Jinyu Group 약 2억 달러, 독일 Marguardt Group 약 5,000만 달러, 현대자동차 약 850만 달러 등 발표
- 아세안 역내국가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조치로 태국이 베트남의 자동차 1위 수입국으로 올라서며 중국과 한국은 순위가 각각 2위, 3위로 하락

■ 철강

● 베트남의 철강 수입시장은 동남아시아 내 1위, 전세계 7위 규모

- 한국은 베트남의 제3위 철강 수입국으로, 한국산 철강 수입액이 베트남 전체 철강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2%
- 베트남은 철강 자급률이 상당히 낮아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을 100% 수입에 의존

제2절 최근 수출입 정책의 변화

■ 2018년 대외무역관리법 시행

- 2018년 1월 베트남의 대외무역 활동 조항과 무역구제조치(반덤핑·세이프가드·보조금)의 표준화 및 일원화를 목적으로 한 「대외무역관리법」³⁴⁾ 발효
 - (신설조항) ① WTO 가입국 또는 베트남과 양자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법인·개인에 베트남에 법적실체(법인·지점 등)가 소재하지 않아도 수출입 권리 부여 ② 국경 인접국가 무역, 관세할당, 별도 관세구역 행정 등 관리조치 ③ 검역(SPS) 및 기술장벽(TBT) 등을 규정

■ 2018년 수출입품목 및 WCO기반 HS코드 개정·보완³⁵⁾

- 2018년 베트남 수출입품목 개정사항, 2017년 아세안역내관세인 AHTN(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s) 및 세계관세기구(WCO)의 단위를 토대로 한 HS코드 보완 사항을 발표
 - (2018년 수출입품목 개정사항) 아세안역내관세(ATHN)에 기반하여 과학기술 발전, 환경규제 변화에 따라 약 2,323개의 새로운 제품(예: 하이브리드 자동차, 약품성분, 기계, 장비 등) 추가
 - (HS코드 병행표기) 살아있는 동물(01류), 날생선(03류 01호)은 kg과 con(베트남 표기)을 병행표기 할 수 있게 되었고, 액상우유(04류), 기름(15류), 과일주스(20류 09호), 음료수(22류)는 kg과 lít(베트남어 표기)으로 병행표기 가능

34) Law on Foreign Trade Management; Law No.05/2017/QH14

35) Circular No.65/2017/TT-BTC

■ 2018년 수출세·수입세 규정 시행령 개정

● 2018년 1월부터 기존 규정이 수정·보완된 수출세·수입세 규정³⁶⁾ 시행³⁷⁾

수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세 부과 품목 중 211호 품목군에 대한 규정 보완 211호 품목군은 수출세표 1~210호에 속하지 않으며, 자원광물소비 에너지 총가치가 제품원가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 세관신고시 품목명, 8단위 HS코드, 수출세율을 기재
우대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화학품목이 우대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벤젠(HS 2707.10.00/2902.20.00), 크시올(HS 2707.30.00), 파라크실렌(HS 2902.43.00), 폴리프로필렌(HS 3902.10.30/3902.10.90) 등
별도 우대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우대 관세율 적용품목(HS 98)이 8개로 증가 동 시행령(부록 II Section II. Part I. 2.2~2.9)의 표준·기술적 요소 충족 시 별도 우대 관세율 적용 (HS 98.11) Alloy steels containing boron and/or chromium and/or titanium (HS 98.25) Fillers, skin care commodities (HS 98.26) 1680/D/2 and 1890 D/2 nylon tire cord fabrics (HS 98.30) Copper wires whose dimension of cross section is between 6mm and 8mm
별도 우대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HS 98.37) Polypropylene granules in primary form (HS 98.39) Bars and rods, hot-rolled, in irregularly wound coils, of other alloy steel (HS 98.46) Set top boxes (HS 98.47) Neoweb commodities
관세 할당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관세할당량을 따르나, 베트남 가입 국제조약의 관세 할당량 조항이 있으면 이를 우선 준수 베트남 가입 국제조약에 관세할당 규정이 없고 특혜관세 조항이 있으면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규정한 관세할당량의 해당물량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적용

36) Decree No.122/2016/ND-CP(2016년 9월 1일)

37) Decree No.125/2017/ND-CP

제3절 최근 품목별 주요 수출입 이슈

■ 자동차·자동차부품

● 아세안 역내 수입차 관세철폐 및 베트남 완성차 수입요건 강화

- 2018년 1월부터 수입업체는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발급³⁸⁾하는 ‘자동차 수입비즈니스 허가증(Business Permit for Automobile Imports)’을 취득할 필요
❖ 2018년부터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에 따라 아세안 역내국간 수입 완성차에 대한 관세율이 완전 철폐됨에 따른 조치로 해석

● 수입중고차 차종별 관세 유형 변경

- 2018년 1월부터 수입중고차에 대해 차종별로 상이한 수입세³⁹⁾ 부과

수입세 유형	변경 후 내용
종량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HS코드 제8703호에 속하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9인승 이하(운전석 포함) 승용차
혼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HS코드 제8703호에 속하는 배기량 1,000cc 초과의 9인승 이하(운전석 포함) 승용차• HS코드 제8702호에 속하는 10인승이상 15인승 이하(운전석 포함) 승용차
종가세 (우대관세율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HS코드 제8702호에 속하는 16인승 이상(운전석 포함) 승합차• HS코드 제8704호에 속하는 설계 총중량 5톤 이하의 화물 운송용 자동차• (단, 냉동차, 폐기물 압착장치가 장착된 폐기물 수거차, 유조차, 귀중품 운송용 장갑차, 레미콘차, 리프트 장착 진흙운반차 등 제외)
종가세 (동종 신차에 적용되는 우대 수입세율의 1.5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HS코드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에 속하는 각종 자동차

38) Decree No.116/2017/ND-CP

39) Decree No.125/2017/ND-CP

● 자동차 부품에 대한 조건부 수입관세 면제

- 2018년 1월부터 일부 수입 자동차부품에 한해 요건 충족시 5년간 수입관세 면제⁴⁰⁾

구 분	내 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품목) HS코드 98.49(98.49.11~98.49.40) 해당,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 • (적용기업) 자동차 생산, 조립, 수입 및 유지보수 관련 정부 규정에 따른 자동차 생산 및 조립하는 기업 • (적용요건) 대기가스배출 기준 2018~2021년 4등급, 2022년 이후 5등급을 충족하며, 일정한 생산량 및 모델기준 충족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적용기간, 수입예정 자동차부품의 수량, 생산 예정자동차 모델 수량 명시) • 수입 자동차부품 사용신고서, 사용된 자동차부품의 수량을 입증하는 회계장부 사본 • 생산 또는 조립된 자동차의 수량 검사기록, 품질·기술안전·환경안전을 입증하는 증명서, 베트남 기술검사소에서 평가받은 기술 디자인 설명서 사본 • 세관신고 리스트, 납부세액 신고서
신청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 • 세관당국은 신청 업체에 대해 검사 실시
수입시 관세납부 후 사후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특혜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사후검사 진행 • 관세특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된 관세를 환급, 요건을 불충족할 시 서면으로 통지

■ 철강재·철강제품

●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시행령

- 2016년 7월부터 기존 중고기계 수입 규정⁴¹⁾을 완화

기 준	신 규
제조기한 5년 이내	제조기한 10년이내
잔존가치 80% 이상	제조표준 기준

40) Decree No.125/2017/NĐ-CP

41) Circular No.23/2015/TT-BKHCN

구 분	내 용
대상물품	HS 84, 85류 해당 중고기계와 그 부속품(예비품 포함)
수입요건	① 제조기한 10년 이내인 중고기계(베트남 수입일 기준) ② 제조표준기준 부합 :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 관련 베트남 국가기술규정 (QCVN),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
제출서류	제조년월 및 수입기계의 제조표준의 증명으로 다음 중 하나 ① 해외 제조업체가 발행한 인증서 ② 관할 검사 기관이 발행한 검사 인증서

■ 의료기기

● 수입 의료기기 등록 허가·제도 시행

- 현지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입 의료기기 관리 체계 구축⁴²⁾
 - 베트남 진출 의료기기 기업은 의료기기 등급, 수입허가서와 자유판매 등록번호, 의료기기 취급자 요건, 라벨 필수 표시사항 등을 점검
 - 베트남 국내 생산 및 해외 수입 의료기기가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자유판매 등록번호 또는 수입허가서를 소지해야하는데, 자유판매 등록번호의 취득 절차는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의

※ 의료기기가 현지에서 유통되기 위한 요건

- 시행령 규정에 의거해 유효한 자유판매 등록번호 또는 수입허가서 소지
- 시행령 54조에서 정한 필수사항이 표시된 라벨 또는 추가 라벨 소지
- 의료기기의 수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문서(일회용 의료기기 제외)
- 베트남어로 표시된 의료기기 사용 방법
- 제품보증 기관, 보증 조건 및 기한 관련 정보(일회용 의료기기 제외)

※ 자유판매 등록번호 취득 여부 확인 필요: 자유판매 등록번호란 A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적용 표준 신고 접수증 번호, B·C·D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자유판매 등록 증명서 번호를 의미

※ 해외수입 의료기기가 자유판매 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

-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증서를 취득한 제조시설에서 생산
- 해외 국가에서 유통 허가(자유판매 증명서) 취득
- 국가기술규정 또는 생산자가 적용 신고한 표준(applicable standard)에 준거

42) Decree No.36/2016/NĐ-CP

● 베트남의 의료기기 신고·등록 체계

구분	대상	등급 분류	유효기간	접수기관
적용표준신고	A등급	저 위험도	무기한	의료기기 판매사업체 본사 소재지의 지방 보건당국
자유판매등록	B등급	저-중 위험도	5년	베트남 보건부
	C등급	중-고 위험도		
	D등급	고위험도		

■ 화장품

● 화장품 수출시 제품등록 등 인허가 규정

- 베트남 식약청(DAV)에서 외국 제조 화장품의 수입허가권인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o.)의 취득을 통해 수입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가 가능
 - ❖ 화장품 제품고시번호 신청비용은 제품당 VND 500,000, 발급소요기일은 영업일 기준 약 3~5일, 제품고시번호는 5년간 유효⁴³⁾
 - ❖ 서류준비 과정 및 제품고시번호를 받기까지 1~6개월 정도 소요
- 제품고시번호 취득을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국가의 관계당국이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이 필요
 - ❖ 우리기업의 자유판매증명서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며 대사관을 통한 영사 확인이 필수
 - ❖ 유효기간이 지난 자유판매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유효기관이 기재되지 않았을 시 발급된 지 24개월 이내로 인정

◎ 수입화장품 등록시 필요 서류 및 내용

서류명	발급기관	내 용
제품등록신청서 (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베트남 보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업자가 현지에서 발급 및 작성 • 법적 대표자의 서명 및 직인 포함 • PDF파일(soft copy)과 종이신청서 (hard copy) 모두 제출 • 제품고시번호 기재 요구
자유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	대한화장품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판매증명서를 베트남 식약청에 제출 해야 제품고시번호 취득 가능

43) Circular No.277/2016/TT-BTC

서류명	발급기관	내 용
제조업 증명서 (Authorization letter from the Manufacture)	대한화장품협회	
사업자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베트남 유통업체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의 유통 책임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등록증 사본 필요 유통업체의 서명과 직인 동봉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베트남 유통업체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 증명서 신청 관련 기록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
분석 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업체 준비	
성분 리스트 (Listed Ingredients)	제조업체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기
화장품 안정성 시험 결과서 (Certificate of Conformity)	제조업체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체에서 해당기관에 신청 및 발급 가능
제품 정보 파일 (Product Information File)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서류 및 제품 설명 요약, 성분 품질, 제품 품질, 안전성 및 유용성이 포함 신고 후 2개월 이내 준비
대리인 위임장 (Letter of Attorney)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본 또는 공증 사본

☞ 베트남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o.) 해당 대상품목

구 분	내 용
적용대상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수 및 화장수(HS 3303)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HS 3304) 샴푸 및 헤어케어 제품(HS 3305) 구강 및 치아 위생용품(HS 3306) 면도 및 목욕 제품(HS 3307)

제품고시번호 철회 해당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을 통해 두가지이상의 제품이 품질 부적합 결과를 받을 경우 • 제조법이 발표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잘못된 제품 원산지가 라벨에 표시된 경우 • 잘못된 제품 속성이 라벨에 표시된 경우 •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경우 • 금지물질을 포함, 허용범위 물질함량을 초과한 경우 •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해외 제조국가에서 금지된 경우 • 현지 유통업체가 제품고시번호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 관할기관에서 제품정보파일(PIF) 요청 시 제출 서류 부재 • 서류, 도장, 베트남/해외 관할기관과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사인 위조 • 제품 신고서 내용이 허위인 경우
---------------------------	---

● 화장품 라벨링 규정 강화

- 베트남의 화장품 라벨링 규정은 아세안 화장품 라벨링 가이드라인⁴⁴⁾을 준수하며, 2017년 6월 베트남의 라벨링 시행규칙⁴⁵⁾에 반영
 - ❖ 아세안 회원국 내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화장품 규정(ASEAN Cosmetic Directive)을 준수
 - ❖ 라벨은 수량, 성분 및 성분 함유량, 로트 번호, 제조일자와 사용기한 일자(사용기한 30개월 미만시 반드시 기재), 사용법, 경고문을 반드시 표기

◆ 수입화장품 라벨링 표기

- ▶ 제품명, 원산지 국가, 용량, 성분의 양, 위생·안전·건강에 대한 정보, 경고 및 주의사항, 사용 및 보존에 대한 지시사항
- ▶ 언어
 - 라벨링에 표기정보는 반드시 베트남어로 표기
 - 예외적으로 국제용어 또는 학명으로 표기 가능: 인체용 의약품 중 베트남어 명칭이 부재한 경우, 화학성분·유효성분·첨가제·의약성분의 화학식, 성분이나 성분수량 표기시 베트남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 번역이 가능하더라도 국제용어 또는 학명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용이한 경우, 제품 제조 외국기업의 회사명 및 주소 등
 - 외국어 표기내용은 베트남어 표기내용과 같아야 하고 글자크기는 작게 표기

44) ASEAN Cosmetic Labeling Requirements Guidelines

45) Decree No.89/2006/NĐ-CP, Decree No.43/2017/NĐ-CP

▶ 사업자 이름과 주소

- 베트남에 수입된 제품은 제조업체 혹은 개인의 이름·주소, 수입업체 혹은 개인의 이름·주소를 표기
- 판매 대리인을 통해 수입시 그 대리인 혹은 대리업체의 이름·주소를 표기

▶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 상품 유효기간이 30개월 미만인 경우 반드시 표기, 일-월-년 순 작성

■ 비료

● 비료업자 수입허가 및 통관 품질검사 시행

- 2017년 9월부터 비료의 수출입, 생산·유통의 단속과 규정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벌 수위 강화 등을 담은 비료 관리 시행령⁴⁶⁾ 시행
 - ❖ 2017년 10월 ‘품질검사 대상 제품·재화 리스트’가 폐지되었지만, 동 시행령에 따라 모든 비료업자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품질검사를 시행
- 동 시행령에 따라 농업농촌개발부로부터 인증(authorized) 및 등록(registered)된 비료업자는 수입허가 없이 비료수입이 가능하지만, 미인증 및 미등록된 비료업자는 수입허가 필요

46) Decree No.108/2017/ND-CP

제IV장

베트남 전자상거래 (E-Commerce, EC)

제1절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제2절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제3절

베트남 판매주체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4절

對베트남 온라인 수출 방법

제5절

전자상거래를 통한 FTA 활용방안



제1절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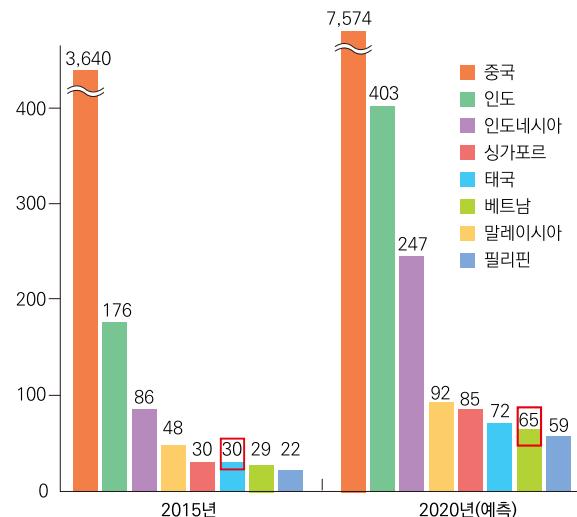
■ 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잠재력

●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아시아지역의 신흥국들이 전자상거래의 매력적인 시장으로 성장

● 실제로 ASEAN 회원국들과 인도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E-Commerce: EC) 시장의 확대를 위한 활동이 현저히 증가

●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15년의 3,64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7,57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

〈아시아 주요국가의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



자료 : BMI RESEARCH 「e-Commerce: Global Developments & Outlook (2016)」

- (인도) 전자상거래시장은 2015년 기준 약 176억 달러로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에서 통틀어 최대 규모이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20%이하 정도임
- (아세안) 회원국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총 6개국의 2015년 기준 총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45억 달러 정도이며, 2020년에는 약 61% 증가한 620억 달러를 예상
- (베트남) 그 중 베트남의 경우 약 54% 정도 증가한 65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발표

●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시아 지역권 국가들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

- ASEAN 회원국들이 전 세계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에 4.1%에 불과하지만 2020년에는 5.5%로 상승할 전망. 또한 인도의 시장 규모도 2020년에는 400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

- 중국을 대표하는 EC기업인 알리바바(Alibaba)는 선진국 중심의 EC시장에서 신흥국으로의 EC 시장 전환에 있어 입지를 굳혀온 기업
- 2016년 말부터 알리바바는 베트남 및 태국의 중소기업 관련 정부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협의를 시작
- 특히 알리바바의 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Ali Pay)를 아시아에 널리 전개하는 전략 수립

■ 역직구 시장 다변화 및 역직구 수출판매 급증

-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소득 수준의 상승, 소비 시장의 확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등으로 몇 년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성장

- 또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인 CBEC(Cross-Border E-Commer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해외 오픈마켓이나 전문플랫폼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 구매가능
- (미국) 해외직구의 경우 온라인 사용자가 EC사이트를 이용하여 해외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이용률은 2016년의 43%에서 2017년 47%로 상승
- (중국) 2016년 직구 소비자수는 4,100만 명으로 이 수치는 전년대비 무려 78.3% 증가한 수치

- 세계의 트렌드에 맞춰 우리나라 또한 전체 온라인쇼핑의 거래액 중 해외직구의 비중이 급증하였으며 해외직구 거래선도 다변화

- 최근에는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국경 간 전자상거래 (CBEC)개념

국경 간 전자상거래란 서로 다른 국가의 거래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어 해외운송을 통해 상품을 배송하고 수령

해외직접구매 개념

국내 소비자가 해외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해외직접구입을 의미하며 줄여서 “해외직구”임

역(逆)직접구매 개념

외국인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한국 제품을 사는 것을 말하며 해외직구와는 반대되는 개념

오픈마켓(open market) 개념

온라인상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개설한 점포를 통해 직접 상품을 등록해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 (한국) 2017년 해외직접 구매를 통한 수입액은 처음으로 20억불을 넘어서며 그 수치는 역대 최대치 기록
- 2017년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096건, 약 9억7천만 달러로 2016년 상반기 건수 대비 기준으로는 34%, 금액기준으로는 30% 대폭 증가⁴⁷⁾

〈한국의 해외직구 수입건수 및 거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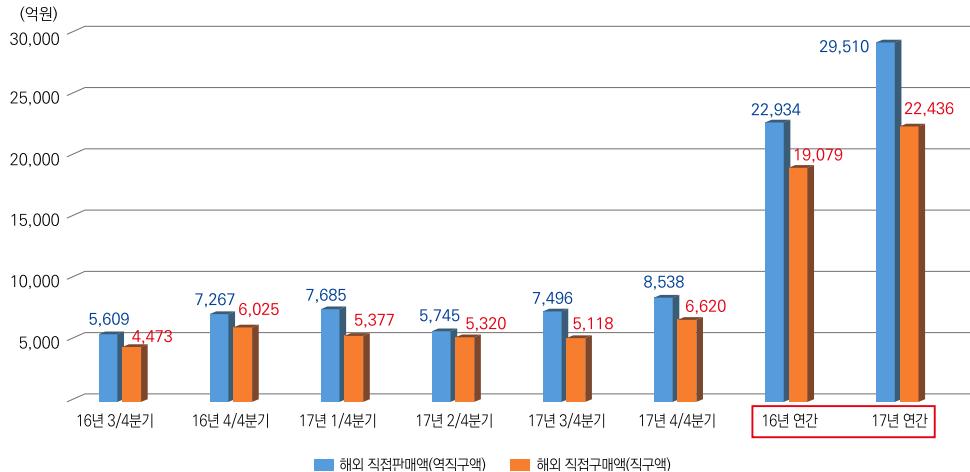
2016년 상반기		2017년 상반기		동기대비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153천건	8,303억원	10,963천건	1조 834억원	34% ↑	30% ↑

- 반면 역직구의 경우도 역직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거래액이 급증 ↑

- 2014년 6,542억 원이었던 역직구 거래액은 2015년 1조 1,933억 원을 기록하며 82.4%의 성장을 기록
- 이와 같은 역직구의 성장세는 지속되어 2017년 연간 역직구 수출규모는 2조 9,510억원 기록
- 2016년~2017년 연간 역직구 거래액이 해외직구 거래액을 추월

47) 2015년을 기점으로 구매절차가 비교적 간편한 목록통관의 비중이 일반통관을 초과함

〈역직구 거래액 추이〉



- 관세청은 2015년 5월 전자상거래 역직구 활성화 지원 대책을 시행 전자상거래업체가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을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 간소화를 추진

※ 통관절차 간소화 내용

-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 “비조작증명서”를 발급하여 자유무역협정 적용 중계무역 수출을 유치
- 비조작증명서란 화물이 보세구역에서 일체의 가공작업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FTA 직접운송 요건 충족 입증을 지원

-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절차와 특송업체 등록 절차도 지속적으로 완화하면서 역직구 활성화⁴⁸⁾를 위해 노력

48) 이외에도 2016년 관세청은 중국내에서 한국산 화장품의 위조상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하기 시작함. 이는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한 관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제도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정식수출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해외 소비자의 국내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내 업체들의 수출 성장, 정식 수출 통관을 거쳐 얻는 혜택 등의 장점이 있음.

제2절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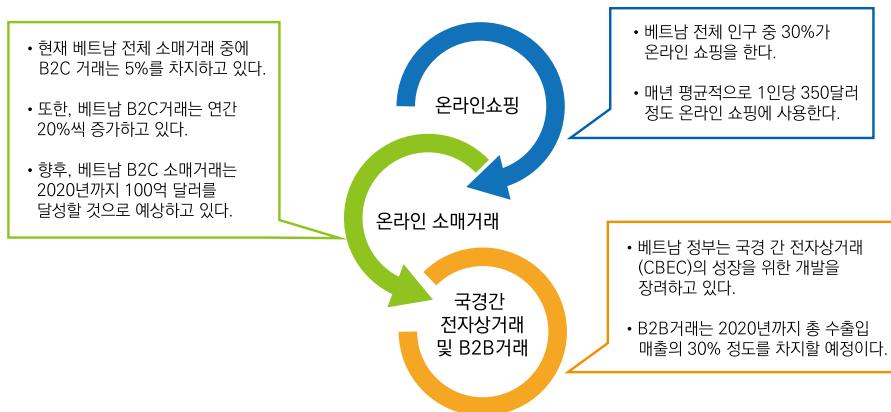
-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VECOM : Vietnam E-Commerce Association)는 「2017년 베트남 전자상거래지수(EBI: E-Business Index⁴⁹⁾」를 발표

- 전국의 전자상거래업계 당해 성장률은 작년대비 25% 정도 성장, 온라인 소매 부문 매출액은 35%로 고성장을 달성
- (분야별) 온라인 여행서비스 부문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호텔의 예약률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하며 매출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지역별)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호치민시, 하노이 대도시 중심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산하의 베트남전자상거래·정보기술국은 2015년 기준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약 41억 달러로 이는 전년대비 37% 성장한 수준 → 2020년에는 100억 달러까지 성장 전망

- 베트남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⁵⁰⁾(Cross-Border E-Commerce :CBEC) 매출은 2008년 이후 3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6년에는 원화⁵¹⁾로 약 480억 원 이상 도달

〈2020년까지의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전망〉



49) 베트남 전 지역의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이 지수의 기반 조사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VECOM에서 전국 4,100개 이상의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B2C, B2B, G2B 거래 등이 포함되어 있음

50)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무역 장벽을 없애고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

51) 환율1VND(동) = 4.82원 기준

■ 베트남 전자상거래 마스터플랜 정책 발표

- 베트남 정부는 「2016년 ~ 2020년 전자상거래 마스터플랜⁵²⁾」을 통해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 관련한 법적 기틀을 다지고 베트남 전 지역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실행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집중할 계획을 발표
 - 1인당 연간 평균 전자상거래 소비 금액을 2015년 160달러에서→ 2020년 내 350달러까지 증가시킬 목표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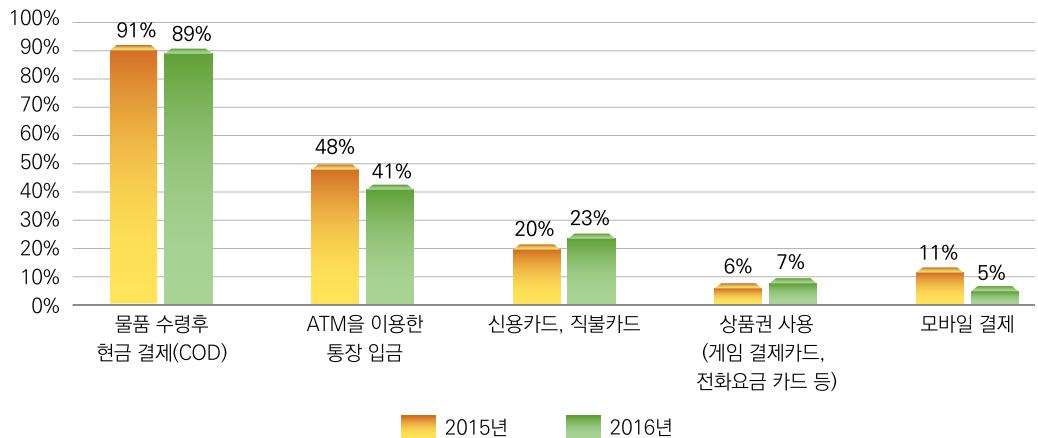
결제수단	추진체제	법제도
B2C 현금 후불 결제방식*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VECOM)	전자상거래개발계획
우편환율	덴마크 국제개발청(DANIDA)	전자상거래법(2005)
카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전자상거래법세칙(2007)
EAB다기능 카드	베트남 전자상거래 정보기술국(VECITA)	정보기술법(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포함)
계좌이체	베트남 전자상거래 개발센터(EcomViet)	

*Cash on Delivery(COD)

- 베트남 온라인쇼핑 결제방법은 현금후불결제(Cash on Delivery, COD)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
 - 실제로도 베트남 전자상거래에서 현금후불결제가 선호되며 전체 거래의 90% 정도가 COD로 거래
 - 이유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 된지 5~6년 정도에 불과하여 현지 소비자들에게 전자결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임

52) The 3rd E-Commerce Development Master Plan for the period of 2016–2020(Decision 1563)

〈베트남 전자상거래 결제수단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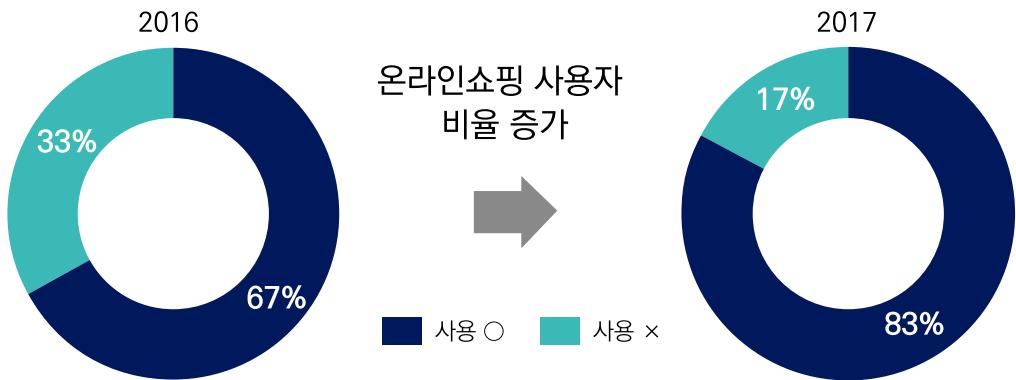


■ 이동통신기 보급에 따른 온라인쇼핑 성장 추세

● 베트남은 이동통신기 보급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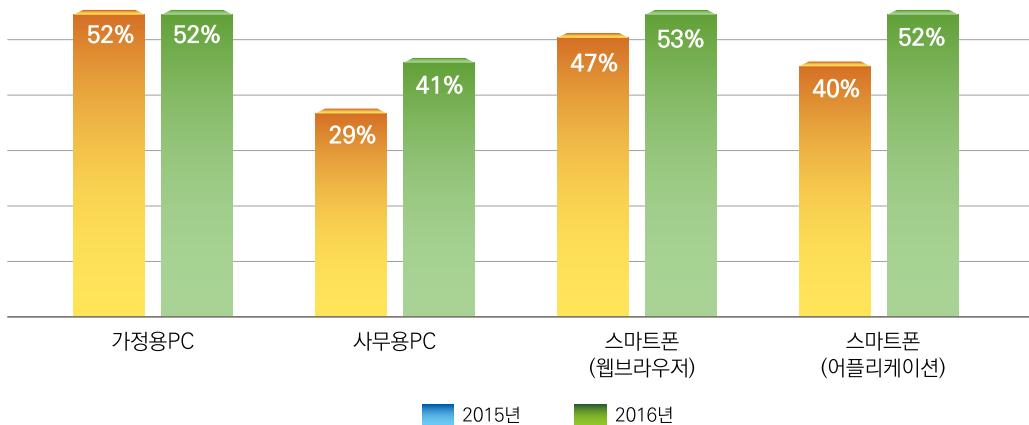
- 소비자들의 온라인전자상거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져, 온라인 쇼핑 스마트 결제 비율의 증가하여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원동력으로서 작용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원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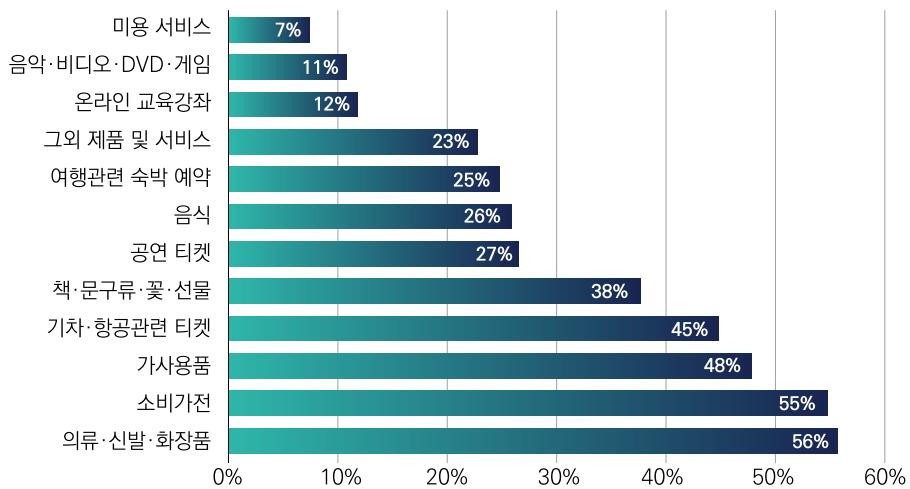
53)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따라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휴대폰 이용 비중이 증가되었다. 2017년 말 누적 기준 베트남 내 사용 등록된 이동통신기는 약 1억 1900만대 이상이다.

온라인쇼핑 스마트폰 결제 비율 증가



- 베트남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장 많이 판매되는 품목은 의류·신발·화장품이며 이어 소비가전, 가사용품, 공연 티켓, 책·문구류·꽃·선물 등임

〈베트남 전자상거래 주요 거래품목〉



제3절 베트남 판매주체별 전자상거래 플랫폼

- 초기 전자상거래 시장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소매업인 B2C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9년부터 기업 간 전자상거래 즉, B2B 시장에 대한 관심 고조

-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는 판매 주체 간 형태에 따라 인터넷 소매업인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 간 전자상거래인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정부 간 전자상거래인 B2G(Business to Government)등으로 구분

〈판매주체에 따른 구분〉

유형	개념
B2C	기업과 개인간의 거래
B2B	기업과 기업간 거래,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포함
B2G	정부와 기업과의 거래 (정부조달업무)
C2C	개인과 개인과의 상거래
G2C	소비자와 정부간의 거래

- 베트남 전자상거래 및 정보 기술기구 (VECITA)는 베트남의 수출입 회사 중 32%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외국 파트너와 거래관계를 맺었으며 11%는 국제 전자상거래에 참여했으며 49%는 웹사이트⁵⁴⁾를 보유한다고 발표

- CBEC 분석가들은 베트남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식적인 거래 통계는 있지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세계 최대의 B2B 거래 총인 Alibaba를 통한 거래가 많은 부분 차지한다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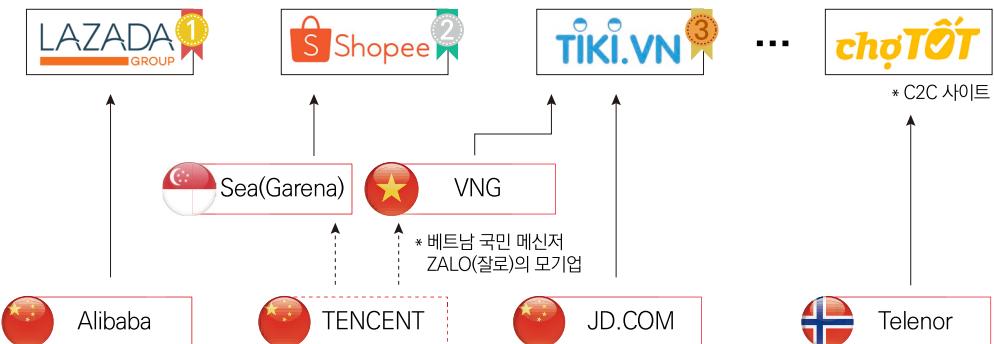
54) 웹사이트가 있는 수출입 업체 중 46%는 '.vn'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54%의 국제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있고, 63%의 웹사이트는 외국어 버전이 있음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 투자 증가

- 알리바바(Alibaba)와 징둥닷컴(京东/JD.COM)과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대기업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에 투자시작 (2017년) 또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Amazon)이 베트남 시장 진출을 계획 중⁵⁵⁾이라고 발표(2018년)

- 아직까지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은 전체 소매유통 시장 대비 3%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지만, 글로벌 전자상거래 대기업들은 베트남 현지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파악하여 현재까지도 꾸준히 투자 중임
- 베트남은 Alibaba에 2,800만 명의 바이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상위 7대 시장
- 그 외 eBay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현재 베트남의 온라인 플랫폼 점유율 확보를 위해 시장개척 및 개발단계

〈베트남 내 상위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주요 투자 기업〉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알리바바,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에 마중을 봇다」

- 최근 베트남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무역에 대해 기업들의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여기며 긍정적인 반응

- 과거 베트남의 중소기업은 Alibaba를 통해 제한된 운영능력만을 보여 수 있었기 때문에 수출입 활동을 위한 전자상거래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음

55) 「베트남 온라인비즈니스 포럼 2018」에서 아마존(Amazon)은 베트남전자상거래협회(VECOM)와 제휴하여 아마존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돋는 '글로벌셀링서비스'를 계획 중에 있음

- 2017년 공식적으로 Mekong Business Initiatives(MBI)⁵⁶⁾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하노이에서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Kiu」가 운영 중 이 플랫폼은 메콩지역과 세계 시장 간의 국경 간 무역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

〈베트남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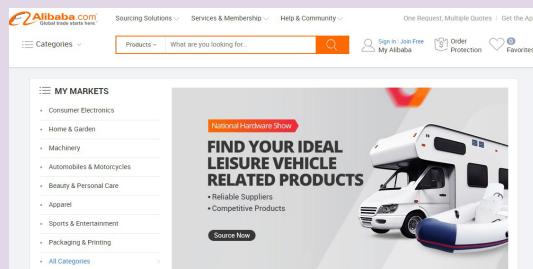
▶ Kiu e-commerce

- Kiu MarketPlace는 공급업체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임
-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포함한 메콩(Mekong)지역의 소비자, 도매수입 업자, 유통업체가 유아복, 가구, 선물, 공예품 등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찾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임
- 2017년에 개설되어 6개월 만에 2,200명의 고객을 확보한 상태임



▶ Alibaba

-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는 베트남 라마다(Lazada)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인수함으로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함
- Alibaba는 주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B2B) 사이의 전자상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Lazada는 주로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 (B2C) 사이의 전자상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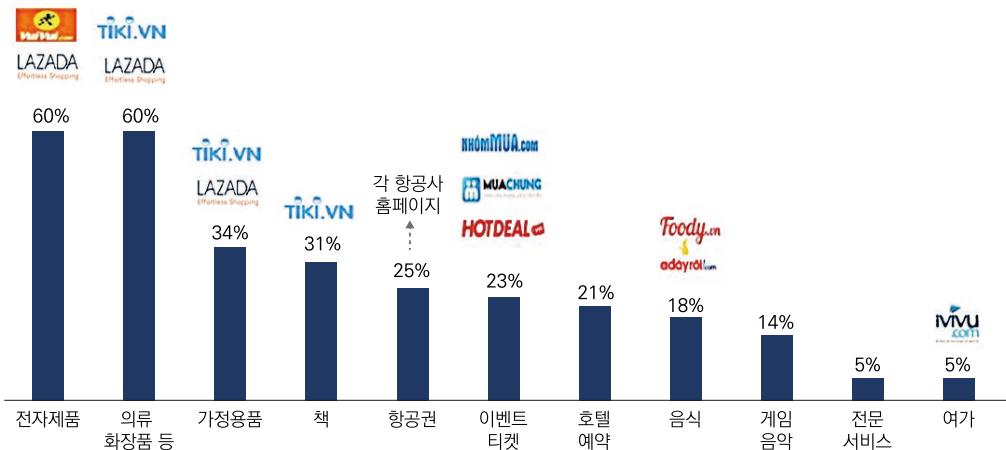


56)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중심으로 메콩강 유역 지역의 민간부문 개발 촉진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기관이다. 호주 정부가 지원하고 아시아개발은행이 수행중이다. <https://www.mekongbiz.org/vietnam/>

■ 베트남 전자상거래의 경영방식은 대부분 B2C, C2C 형태

- 베트남 전자상거래의 온라인판매 플랫폼은 대부분 B2C 및 C2C 경영방식이며 주로 플랫폼 형태는 오픈마켓, 소셜네트워크, 개인온라인쇼핑몰임
- 전자상거래 대표사이트인 LAZADA(라자다)는 주요 거래 물품은 패션, 화장품, 식료품, IT/전자제품 등 이 모든 분야를 포함하며 1,500개 이상의 판매업체 보유
 - iPrice(2018)는 베트남 최대 오픈마켓 사이트 LAZADA(라자다)가 베트남 내 약 19%를 차지하며 점유율 1위 발표

〈베트남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주요 구매물품 및 대표사이트〉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 또한, 2017년 상반기에는 중국의 Alibaba(알리바바)가 LAZADA를 인수함에 따라 취급 상품 범위 확대 중
- 베트남 소비자들은 해외 전자상거래 구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높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적극적인 글로벌 EC플랫폼 활용이 부족한 상황

■ 對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방법

● 현지 로컬 EC 오픈마켓 플랫폼 활용

〈베트남 10대 로컬 전자상거래 플랫폼⁵⁷⁾

명 칭	소 개
 Laza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시기 : 2012년 제품수입방식 : B2B, B2C URL : https://www.lazada.vn/ 투자자 : Alibaba 방문자(월평균)⁵⁸⁾ : 약 6천만명 품목 : 자동차, 신선 식료품 제외한 모든 것
 Thegio di do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시기 : 2004년 제품수입방식 : B2C URL : https://www.thegioididong.com 투자자 : Mobile World Investment Corporation 방문자(월평균) : 약 4천만명 품목 : 소비가전
 Sen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시기 : 2012년 제품수입방식 : B2B, B2C URL : https://www.sendo.vn 투자자 : FPT 방문자(월평균) : 약 3천만명 품목 : 자동차, 신선 식료품 제외한 모든 것 <p>※ 베트남의 유명 전자제품 취급 업체인 FPT가 운영하는 곳으로, FPT는 전자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본사의 사이트 외에,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Sendo를 두어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p>
 Shop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시기 : 2016년 제품수입방식 : C2C URL : http://www.shopee.vn 투자자 : Sea 방문자(월평균) : 약 2천만 명 품목 : 종합품목

57)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 순위

58) 2017.12월 기준 자료

명 칭	소 개
 Tik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시기 : 2010년 제품수입방식 : B2B, B2C URL : https://tiki.vn/ 투자자 : JD, VNG 방문자(월평균) : 약 2천만명 품목 : 자동차, 신선 식료품 제외한 모든 것 <p>※ 판매 주력상품은 가정용품, 의류, 도서등 소매품으로 이는 해당 플랫폼의 소비자 평가(리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p>
 FPT sh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시기 : 2012년 제품수입방식 : B2C URL : https://ftpshop.com.vn/ 투자자 : FPT 방문자(월평균) : 약 1천만명 품목 : 소비가전
 Dien may xan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시기 : 2014년 제품수입방식 : B2C URL : https://www.dienmayxanh.com/ 투자자 : Mobile World Investment Corporation 방문자(월평균) : 약 1천만명 품목 : 소비가전
 Adayro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시기 : 2015년 제품수입방식 : B2C URL : https://www.adayroi.com/ 투자자 : VinGroup 방문자(월평균) : 약 6백만명 품목 : 자동차,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것 <p>※ 현지의 유통 분야 대기업 중 하나인 VinGroup은 Adayroi.com을 개설해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있다. 특히 VinGroup은 최근 소매유통 사업에 크게 집중해온 바, 동 온라인 사이트는 식료품에 특화되어 있다.</p>
 Vat g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시기 : 2013년 제품수입방식 : C2C URL : https://www.vatgia.com/home/ 투자자 : VNP Group 방문자(월평균) : 약 6천만명 품목 : 종합품목

명 칭	소 개
 Nguyenki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시기 : 2011년 제품수입방식 : B2C URL : https://www.nguyenkim.com/ 투자자 : Central Group 방문자(월평균) : 약 6천만명 품목 : 소비가전제품

●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EC 오픈마켓 플랫폼 활용

(베트남 현지 진출⁵⁹⁾ 한국 EC 오픈마켓)

〈베트남 시장 진출 국내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이 름	소 개
 LOT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시기 : 2016년 URL : https://www.lotte.vn 품목 : 패션, 화장품, 아기용품, 주방용품, 전자기기, 스포츠 용품, 헬스케어제품, 식품 등 <p>※ 패션과 화장품 상품군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자(월평균) : 약 6천만명
 YES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시기 : 2012년 URL : www.yes24.vn 품목 : 전자제품, 소비가전, 식품 등 모두 일반 소비재로 현지 생산 한국제품 및 한국 수입 상품도 포함 방문자(월평균) : 약 84만 8천명

59) 베트남 현지에 한국기업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이다.

제4절 對베트남 온라인 수출 방법

■ 베트남 전자상거래 라이센스 등록

●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을 통한 수출판매를 위해서는 우선 베트남 사업 라이센스 필요

- LAZADA를 포함한 10대 로컬 EC 플랫폼 내 희망 셀러 수가 증가
- 베트남에서 인지도가 낮은 상품들은 입점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더욱더 입점이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 중
 - ❖ 따라서 베트남으로의 온라인 수출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현지 파트너 모색이 최우선 작업

● 對베트남 온라인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 또는 개인 투자자 (베트남 현지법인이 없는 경우) → 현지 수입상(바이어)을 통해 현지 오픈마켓 셀러 등록⁶⁰⁾을 대행

- 베트남 소매유통법(Decree No. 09/2018/ND-CP)에 따라, 베트남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유통만 하는 경우 유통 라이센스 필요

■ 베트남 로컬 EC 오픈마켓 활용 및 절차

● 베트남 현지 벤더(수입상) 활용

- 베트남 로컬 EC 오픈마켓에서 해외 판매자가 직접 물품을 등록하고 판매 불가능
 - ❖ 베트남 현지 벤더 활용 : 벤더는 모든 수입통관 및 필요시 물품에 대한 인증 절차⁶¹⁾를 담당하고 책임 (벤더란 수입상 역할을 하는 현지법인 사업자를 말함.)
- 이러한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법·제도적인 까다로움으로 한국의 개인 및 기업이 직접 판매자로 활동하기에 매우 제한적

60) KOTRA(2018), “알리바바,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에 마중물 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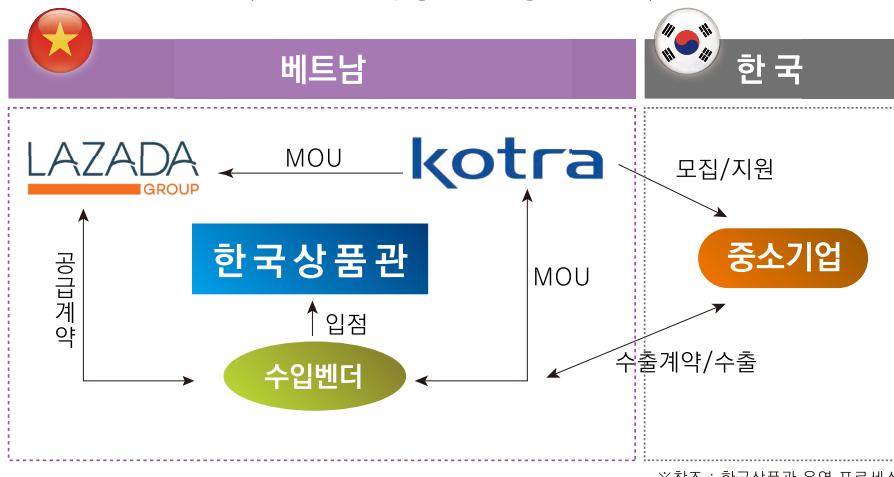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5830>

61) 오프라인의 물품 수입통관절차 및 인증과 동일

● 베트남의 대표적인 오픈마켓인 LAZADA는 KOTRA 호치민 무역관과 함께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

- 한국의 유망한 중소기업의 소비재를 KOTRA관(사이트)에 소개하여, 해당 소비재를 베트남에 판매할 수 있도록 베트남 현지 수입 상이 되어줄 벤더 지정을 통한 간접입점 방식으로 로컬 EC 오픈마켓으로의 진출 지원

〈KOTRA 한국 상품관 운영 프로세스〉



※참조 : 한국상품관 운영 프로세스

■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EC 오픈마켓 활용 및 절차

●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EC 오픈마켓 활용을 위해 베트남 현지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 체크 필수

- (필요사항) 투자 증명서 취득이 필요한데, 투자금액이 클 경우에는 등록에 시간 소요되므로 유의 또한, 사업 실시 전에 산업무역부(MOIT)에 등록해야하며, 매년 거래 상황에 대해 산업무역부(MOIT)에 보고 의무
- (광고규제) 대상상품 및 광고법에 대해 규제가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서도 비교 광고를 금지하는 등 사전 체크 필수

- (사전조사) 베트남의 對세계 비관세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오픈마켓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별 비관세장벽 사전에 인지 필요

〈베트남 시장 진출 국내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관련법령	내 용
법인설립	공통투자법 59/2005/QH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 외국 투자 회사가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절차 관련 규정
	통일기업법 60/2005/QH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기관설계, 결의방법, 조직운영방법에 관한 규정 • 사업 거점을 설립할 시에 투자등록의 절차또는 투자에 관한 국가 관리기관의 조사에 따른 투자증명서 발행할 필요가 있음 • 투자증명서는 사업등록증명서와 동일
사업허가	전자상거래 관한 규정 46/2010/TT-B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를 시작할 경우 신고 사항 및 규정 • 웹사이트 상에서 상품판매, 서비스 제공시의 활동에 관한 법령
사이트 개설	전자거래법 (Laws on E-transa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상에서 데이터 교환 메시지 관련 법적 유효성, 전자상거래에 관한 보안· 안전성· 기밀 등을 규정
금지상품	상업법에 관한 규정 59/2006/ND-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규제 제품 리스트
상품표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 46/2010/TT-B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 상에 기재되어야 하는 규정
광고·PR	광고법 16/2012/QH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를 금지하는 상품 및 금지된 광고기법 등의 규정
모바일 프로그램 관리	59/2015/TT-B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관리에 관한 통지
사이트 관리	47/2014/TT-B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사이트 관리에 관한 통지
판매자 책임	52/2013/ND-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7조 「전자상거래 판매자 책임」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SNS를 개설하는 업자· 조직· 개인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규정한 법령을 엄수해야 한다.

- 베트남의 시행령 52/2013/ND-CP은 베트남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사업자에 적용되는 법으로 해외에서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EC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시행령 규정 인지 필수

〈시행령 52/2013/ND-CP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개인, 기업에 해당한다. • 여기서 말하는 개인, 기업 이란 (i) 베트남인, 베트남상인 또는 베트남 기업 (ii)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iii) 투자사업, 체류인사무소 설치, 베트남 도메인명으로 개설된 웹사이트를 통해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있는 외국상인 및 외국기업을 포함한다. • 또한,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인터넷, 모바일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그 외 오픈 네트워크에 접속된 방법에 기초한 기업 활동을 말한다.
② 전자상거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자사제품 혹은 서비스를 온라인 판매하는 것 「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ii) 타사 제품 혹은 서비스 판매를 위한 장소를 온라인에 제공하는 것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두 가지로 분류한다. • 후자(ii)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의 거래장소, 온라인옵션웹사이트, 온라인프로모션웹사이트, 그 외 산업무역부(MOIT)가 지정한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③ 통지 또는 등록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 에서 언급한 「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 산업무역부(MOIT)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④ 정보공개 · 보고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업자 즉,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웹사이트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웹사이트 상에 공개해야 한다. • 또한, 매년 1월 15일까지는 전년도 경영 상황에 관한 통계 데이터를 산업무역부(MOIT)에 보고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업자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 또한, 개인 정보의 수집·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EC 오픈마켓 공개 시 필요 인증마크

- 베트남 산업통산부 발행 인증마크는 공정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 구축에 필요한 인증

- (인증마크 획득) 베트남에서는 해당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있는 수출업자, 거래자만이 합법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
- (인증마크가 없는 경우) 인증마크 없이 전자상거래를 운영할 시 불법사업 운영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
-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개인 및 기업(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숍, 온라인옵션) 등은 인증마크 신청 필수

〈인증마크〉



■ 베트남 산업통상부 인증마크 취득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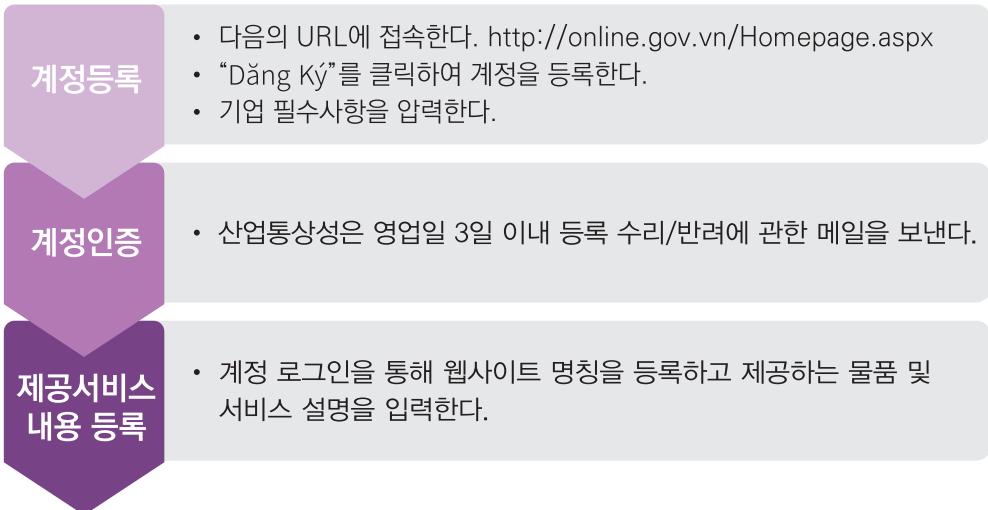
- 베트남 현지 전자상거래 경영을 위한 인증마크는 다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록 및 취득이 가능

- (준비서류) 원본서류 혹은 복사본을 준비

인증마크
신청방법

- 회사설립승인서 / 투자허가서 / 투자라이센스
- 상업등기부 / 투자등기부 / 투자아이센스
- 설립취의서(회사)
- ID카드(개인)
- 서비스 제공 내용을 포함한 서류 등 (예시)
작품안정증명서, 식품유통ライ스, 여행라이센스

- (신청방법)



- (인증마크 취득 웹사이트)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ONLINE.GOV.VN](http://online.gov.vn).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to TRANG CHỦ, GIỚI THIỆU, TIN TỨC - SỰ KIỆN, VĂN BẢN PHÁP LUẬT, BIỂU MẪU, and HƯỚNG DẪN.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search bar with fields for Tên đăng nhập (mã số thuế), Mật khẩu, Lưu tên đăng nhập, and Quên mật khẩu. There are also buttons for Đăng nhập (Login) and Đăng ký (Register).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warning banner with a yellow triangle containing an exclamation mark and the text “CẢNH BÁO, LỪA ĐẢO” (Warning, Scam). Below the banner, there is a link to a news article titled “Cảnh báo hiện tượng mạo danh Bộ Công Thương lừa đảo doanh nghiệp sở hữu website TMĐT” (Warning about the phenomenon of冒充工商业部的网站进行诈骗) dated 25/12/2017.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Thông báo” (Notice) section with three items:

- Thủ tướng chỉ thị tăng cường quản lý hoạt động liên quan tới Bitcoin, tiền ảo (12/04/2018)
- Hội thảo Nâng cao kiến thức sở hữu trí tuệ trong quản lý thương hiệu (10/01/2018)
- Tập huấn thanh tra, kiểm tra và xử lý vi phạm trong Thương mại điện tử tại Lạng Sơn (25/12/2017)

At the bottom, there is a page navigation bar with links 1, 2, 3, 4, 5, and Xem thêm >, followed by a “LIÊN KẾT” (Link) section.

자료 : www.online.gov.vn

- (계정설정)


BỘ CÔNG THƯƠNG
ONLINE.GOV.VN
 CÔNG THÔNG TIN QUẢN LÝ HOẠT ĐỘNG THƯƠNG MẠI ĐIỆN TỬ

[Home](#) | [About](#) | [News - Events](#) | [Legal Documents](#) | [FAQ](#) | [Guide](#)

계정 가입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조직 : 행정 기관, 협회, 단위... 한법적으로 세금 코드의 우수에 관계없이 설립 됨.
 - 거래자 : 행정 방식으로 설립되어 세금 코드, 사업자 등록증(예: 범인 기업 등)이 있는 경제 단체 포함
 - 개인 : 개인을 판매용 전자 상거래 웹 사이트를 설립하거나 소유합니다.
 (*) 필수 정보

거래자 정보

01 - 제목 선택 :

02 - 상인 이름 :

03 - 거래 명 :

04 - 세금 코드 :

05 - 사업자 등록(세금 코드 이외의 경우) :

06 - 발행일 :

07 - 사업 분야 :

08 - 상인 주소 :

09 - 국가 :

10 - 도시 / 지방 :

11 - 이보이스에 표시된 판매자 주소 :

12 - 전화 :

13 - 팩스 :

계정 정보

01 - 계정 : *
거래자 코드로 자체 수집 된 계정

02 - 비밀번호 : *
비밀번호는 8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03 - 비밀번호 재 입력 : *

04 - 이메일 : *
이 전자 메일은 산업통상부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데 사용됩니다.

05 - 전자 메일 재 입력 : *

법정 대리인 정보

01 - 성명 : *
대리인은 반드시 성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02 - 생년월일 : *

03 - 연락처 주소 : *

04 - 모바일 : *

05 - 이메일 : *

06 - 직위 : *

전자 상거래 및 정보 기술기구, 산업 통상부, No.25 Ngo Quyen, Hoan Kiem, 하노이, 또는 이메일
 qltmdt@moit.gov.vn

자료 : www.online.gov.vn

제5절 전자상거래를 통한 FTA 활용방안

■ 베트남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통관

- 베트남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은 오프라인 수입통관 절차와 동일
 -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이 주로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 및 식품(건강식품) 등은 수출 전 단계부터 많은 시간을 걸쳐 까다로운 단계(인증 등)를 거쳐야 함에 주의
- 베트남의 전자상거래수입통관에 있어 품목별 규제·인증 관련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오프라인의 일반 수입통관과 동일하게 적용

■ 베트남의 소량배송에 관한 수입절차

- 베트남은 2010년 재정부(Circular No.78/2010/QD-TTg) 공시를 통해 소량배송에 대한 세금과 수입절차 관련 제도 발표
 - 국제택배로 수입된 상품의 통관 절차는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실시
 - 국제우편으로 수입된 상품의 통관 절차는 국제우편 관할의 세관에서 실시 (No.100/2010/TT-BTC)
 - 또한, 2011년 2월 이후 국제특송화물 서비스를 이용한 약 4만 8천원⁶²⁾이하의 수입품에 대한 수입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No.78/2010/QD-TTg)
- 국제 택배서비스의 화물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되며 화물별로 세관수속이 상이 (Circular No.662/QD-TCHQ)

62) 2018년 7월 10일 환율로 약 100만동(VND)

국제택배우편화물 분류	세관수속
자료, 무역관련 서류 (청구서,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 면세대상의 화물	세관검사는 면제된다.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물품 중 5% 정도 기계로 검사를 실시
신고가격 ⁶³⁾ 2,000만동 이하의 화물	기계로 검사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5%정도 세관의 검사자에 의해 검사된다.
신고가격 2,000만동을 초과하는 화물, 수입조건이 있는 화물, 국가기관이 규정한 조사를 실시한 화물 등	모든 세관의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

자료: JETRO(2014), 「소량화물 통관·관세제도 (베트남)」

- (세관수속에 구비서류)⁶⁴⁾ : 세관신고서, 수입상품의 명세서, 필요시에 따라 그 외 통관서류

■ 베트남 전자상거래 관련 세금

- (판매대상) 판매하는 것이 물품이냐 물품이외(전자서류 등)의 것이냐에 따라 베트남의 부과세금 상이
 -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베트남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며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ET)도 덧붙여 부과
 - 물품이외의 전자서류등과 같은 경우에는 관세, 특별소비세(ET)는 부과되지 않지만, 외국인 계약자세(FCT)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 (외국인 계약자세(FCT))⁶⁵⁾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베트남 개인 또는 베트남법인과 계약을 진행할 시에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즉, 베트남 기업이 해외로부터 서비스를 수입한 경우에 부과
 - 전자서류 등의 데이터를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신할 경우에는 관세 및 특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외국인 계약자세의 규정에 따라 VAT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음

63) 수입상품의 신고가격은 해당 상품대금을 지불하는 금액이다 (No.40/2007/ND-CP)

64) Circular 100/2010/TT-BTC

65) 외국계약자세금은 VAT와 CIT 구분으로 구성된다. 외국계약자는 발생한 부가가치 및 소득에 대한 외국계약자세금이 부과된다. 외국계약자는 그 외 세금, 수수료등 현행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외국계약자세금(FCT) = 법인소득세(CIT)/개인소득세(PIT) + 부가가치세(VAT) + 수수료 등

- 베트남 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을 통해 전자 서류 등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전송할 경우에는 외국계약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부과방법) 베트남 국내 판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에 있어 외국계약자 세금 1%가 부과됨
- 또한,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베트남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판매가격에 외국인 계약자 세금 1%가 부과됨과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외국인 계약자 세금이 부과됨

〈외국인 계약자세(FTC) 납부 방식에 따른 장·단점 비교〉

방법	직접법	원천징수법	혼합법
장점	매입부가세 공제 가능	외국사업자를 대신하여 발주처에서 대금 지급 시 해당 FCT를 원천징수하므로 회계기록 및 관련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감 존재	직접법 보다 행정 부담이 덜함 (Simple VAS 사용) 매입 부가세에 공제 가능
단점	Full VAS 적용에 따른 행정 비용 발생 현지에 등록된 entity 설립 및 청산 절차 복잡	매입부가세 공제 불가(외국사업자 원가로 인식)	Simple VAS 도입 및 운용 관련 비용 부담 발생
실제 적용 사례	한국 사업자들의 경우, 많이 적용하지 않음	기계/설비만 공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없거나 제한적이며 베트남 발생 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 선호함	베트남 내 매입부가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선호함 (EPC 사업 등)

■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을 통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관련 세금

-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현지법인을 통한 EC 사이트를 구축 하는 하는데 모회사로부터 EC사이트 구축 등을 위한 기술지원이 제공될 경우에 외국계약자 세금이 부과됨. 또한, 이전가격세제에 기반을 둔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성이 높음
- 베트남 재무부는 2010년에 이전가격세제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안 Circular No.66/2010/TT-BTC를 공표함. 또한, 현지 자회사가 한국을 포함하여 베트남 외 해외 법인에 EC사이트 제작을 외주로 주었을 경우에도 외국계약자세금이 부과

■ 국내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통관

● (특송화물) 과거 특송화물은 서류, 카다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해외 거래회사가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 이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증가

- (정의) 용도, 중량, 가격 등에 상관없이 택송품 운송업자로 등록된 자가 운송하는 물품
- (신고유형)가격 등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3가지로 분류

〈우리나라 특송화물 수입통관 개요⁶⁶⁾

구 분	목록통관	간이신고	수입신고
해당물품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은 200불)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 (미국발은 200불)	물품가격 미화 2,000불 초과, 목록통관·간이신고 배제대상 (식의약품, 검역대상 등 세관장학인대상 물품)
신고인	특송업체	화주, 관세사	화주, 관세사
관련법령	관세법 제254조의2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출항목	총 신고 항목	27개	57개
수하인 정보	기업	업체명, 주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개인	성명, 주소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물품정보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등 *기재생략 : 원산지증명서 유무	품명, HS코드, 수량, 중량, 가격 등 *기재생략 : 원산지증명서 유무
개인정보 제출 유무	필요 없음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서류제출	필요 없음	필요 없음	가격자료, 원산지 증명서 등 제출

66)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국내 전자상거래 FTA 수출활용 방법

- 관세청은 2016년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식통관절차에 따른 혜택은 유지하면서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하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⁶⁷⁾를 시행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도입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반적인 수출신고제도는 이용에 번거로움이 있음국민소득 증대 및 내수진작을 위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가 시행됨
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출신고항목을 축소하여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시행함해외거래처 부호(구매처 부호)는 생략이 가능함관세청 통관포털을 통해 일괄 등록 기능을 도입함

- (FTA수출활용 방법) 전자상거래를 통한 FTA 수출활용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을 교부받아 수출신고 항목이 대폭 축소된 생략 가능한 항목을 배제하고 수출신고

구분		수출실적 인정	관세환급 가능	신고항목
간이수출신고 (2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수출	○	○	57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33개
	통관목록 (특송화물)	△	×	17개
	통관목록 (국제우편)			17개

- (변경사항) 200만 원 이하의 경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2013년도에 57개 수출신고 항목도 2015년에는 33개까지 줄어들었고, 수출신고 없이 국제우편으로 해외 배송하는 200만 원 이하 물품은 수출실적으로 인정함.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수출신고와 특송업체 등록이 편리해짐

67) 관세청고시 제2016년 70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간이수출신고 활용방법)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서’를 업체 소재지 관할 세관에 제출함
- (간이수출신고 기준) 물품가격이 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개별 판매건별로 수출신고가 되면 환급대상에 대한 환급 절차 이행이 가능
또한, 수출실적이 인정되고, 정식통관에 따른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됨. 즉, 특급택송업체 (물류업체)명의가 아닌 관세사 혹은 수출화주 명의로 직접 신고 되어야 함

〈간이수출신고의 장단점〉

장점

- 정식통관절차를 거치게 되어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 주문취소 등에 따른 반품 제품의 재수입 시 관세 면제받기 용이하다.
- 환급대상 화물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다.

단점

- 수수료 등의 주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정식 통관절차로 인해 수출 이행보고를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서 및 신고증〉

(별지 제13호 서식) (신 설)

(별지 제14호 서식) (신 설)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갱신)신고서		
①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		법인등기번호
② 소재지	(전화번호 :)	
③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번호 :)	
⑤ 전자우편주소		
⑥ 인터넷도메인주소		
⑦ 주요취급품목		
⑧ 신고번호	※ 갱신신고의 경우에만 기재(세관 3자리 + 연도 2자리 + 일련번호 5자리)	
<small>「관세법」 제2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갱신)신고합니다.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small>		
세관장 귀하		
<small>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small>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 ² (재활용품))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		
①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② 소재지 :		
③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④ 주소 :		
⑤ 인터넷도메인주소 :		
⑥ 신고번호 :		
<small>위 업체는 「관세법」 제2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신고되었음을 증명합니다.</small>		
*교부사유 :		
*최초 신고증 교부일 :	년 월 일	
세관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 ² (재활용품))		

긴이수출신고 생활항목 수출신고서	(3) 제조사 기재항목 중 산업단지 부호	(19) 운송형태 (20) 검사희망일	(41) 원산지 (42) 포장갯수	
	(4) 구매자 기재항목 중 구매자 부호	(21) 물품소재지 (22) L/C 번호	(43) 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9) C/S구분	(23) 물품 상태 (24)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47) 운임 (48) 보험료	
	(11) 종류	(25) 반송사유 (27) 품명	(49) 결제금액	
	(14) 적재한	(31) 성분 (39) 송품장번호	(50) 수입회물관리번호	
	(15) 석박회사(항공사)	(40) 수입신고번호 (51) 컨테이너번호	(53) 운송(신고)인	
	(16) 선박명(항공편명)		(54) 기간	
	(17) 출항예정일자			
	(18) 적재예정보세구역			
	[별지 제1호서식]			
	 수출신고서			
	※ 처리기간 : 즉시			
	① 신고자 XXXXXXXXXXXXXXXXXXXXXXXX		⑥ 신고번호 99999-99-999999	④ 세관과 999-99
	⑦ 신고일자 YYYY/MM/DD		⑧ 신고구분 X	⑨ C/S구분 X
	⑩ 수출 대행자 X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부호) XXXXXXX-9-99-9-99-9 수 출 화 주 X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부호) XXXXXXX-9-99-9-99-9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 (대표자) XXXXXXXXXXXXXXXX (소재지) 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수출자구분 X ⑪ 거래구분 X ⑫ 종류 X ⑬ 결제방법 X ⑭ 목적국 XXXXXXX ⑮ 적재량 XXXXXXX ⑯ 선박명(항공편명) XXXXXXX ⑰ 출항예정일자 YYYY/MM/DD ⑱ 운송형태 XX XXX ⑲ 검사희망일 YYYY/MM/DD ⑳ 물품소재지 XXX XXXXXXXXXXXXXXXXXXXXXXXX / XXXXXXXXXXXXXXX ㉑ L/C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 ㉒ 물품상태 X ㉓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X ㉔ 반송 시유 XX			
	㉕ 제조자 X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부호) XXXXXXX-9-99-9-99-9 제조장소 XXX 산업단지부호 XXX			
	㉖ 구매자 XXXXXXXXXXXXXXXXXXXXXXXX (구매부호) XXXXXXXX 품명 (판번호/판코드 : 999/999) ④ 품명 XXXXXXXXXXXXXXXXXXXXXXXX ⑤ 상표명 XXXXXXXXXXXXXXXXXXXXXXXX ⑥ 가격표명 XXXXXXXXXXXXXXXXXXXXXXXX			
㉗ 모델·규격 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㉘ 성분 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 ㉙ 수량 999,999,999,999(XXX) 9,999,999,999,99 999,999,999,999(XXX) 9,999,999,999,99 ㉚ 단가 (XXX) \$ 999,999,999,999 \$ 999,999,999,999 ㉛ 금액 (XXX) \$ 999,999,999,999 \$ 999,999,999,999				
㉕ 세번부호 999, 99-9999 ㉖ 순증량 999,999,999,999(XXX) ㉗ 수량 999,999,999,999(XXX) ㉘ 신고가격(FOB) \$ 999,999,999,999 ㉙ 송장번호 XXXXXXXXXX ㉚ 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XXX) ㉛ 원산지 XX-X-X ㉜ 포장갯수(종류) 999,999(XX)				
㉖ 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XXXXXX)		㉗ 출신고가격 (FOB) \$ 999,999,999,999 \$ 999,999,999,999		
㉘ 운임 (%) 999,999,999		㉙ 결제금액 XXX-XXX-999,999,999,999		
㉚ 수입회물관리번호 XXXXXXXXXXXXXXXX		㉛ 컨테이너번호 XXXXXXXXXXXXXXXX		
㉜ 신고인기재란 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㉝ 세관기재란 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		
㉞ 운송(신고)인 XXXXXXXXXXXXXXXXXXXXXXXX ㉟ 기간 YYYY/MM/DD 부터 YYYY/MM/DD 까지		㉟ 출적재의무기한 YYYY/MM/DD ㉟ 출당당자 XXXXXXX(XXXX)	㉟ 신고수리일자 YYYY/MM/DD	

[참고] 베트남 FTA 체약당사국의 관세율 확인방법

- ▶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과 FTA체결한 국가로의 수출활용을 위한 상대국 관세율 확인 가이드라인(단, 상대국 HS CODE를 인지하고 있어야함.)

〈베-중 FTA 활용 시 중국수입세율 확인 예시〉

- ① 관세법령정보포털 접속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② 세계HS → 관세율표 클릭 → 좌측하단(중국) 국가 선택

③ 관세율표 기준년도 선택 → 상대국(중국) HS 코드 기준으로 우측 상단 검색

The screenshot shows the 'HS Code Classification - Sub-item List' (HS-ULS-0201-002Q) interface. On the left, there's a sidebar with 'HS Information' and a dropdown for 'Country' set to 'China'. Below it are dropdowns for 'Year' (2018), 'HS Chapter', 'HS Item', and 'HS Sub-item'. The main area shows a hierarchical tree for China, with '2018' highlighted. To the right, a search bar contains '7616.99-90'. The results table has two sections: 'Live animals and animal products' (01) and 'Foodstuffs' (02). Both sections show various sub-items with their descriptions and 'Search' buttons.

* 베-중 FTA 활용시 중국수입세율 확인 예시

④ 외국관세율상세 → 협정세율 확인

The screenshot shows the 'Foreign Duty Rate Table' (HS-ULS-0201-008Q) interface. On the left, there's a sidebar with 'HS Information' and a dropdown for 'Country' set to 'China'. The main area shows a detailed table for HS code 7616. The table includes columns for 'Country' (China), 'HS Number' (7616.99-90), 'Year' (2018), 'Unit' (kg), and 'Duty Rate' (40%). Below the table, a note states: '※ 각 국의 관세율표의 세율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과가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At the bottom, there's a section for 'Agreement Duty Rates' (협정세율) with a table showing rates for various countries like MFN, FTA_PAK, FTA_NZL, etc., with 'FTA_ASEAN' highlighted.

